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2027)

2023, 3,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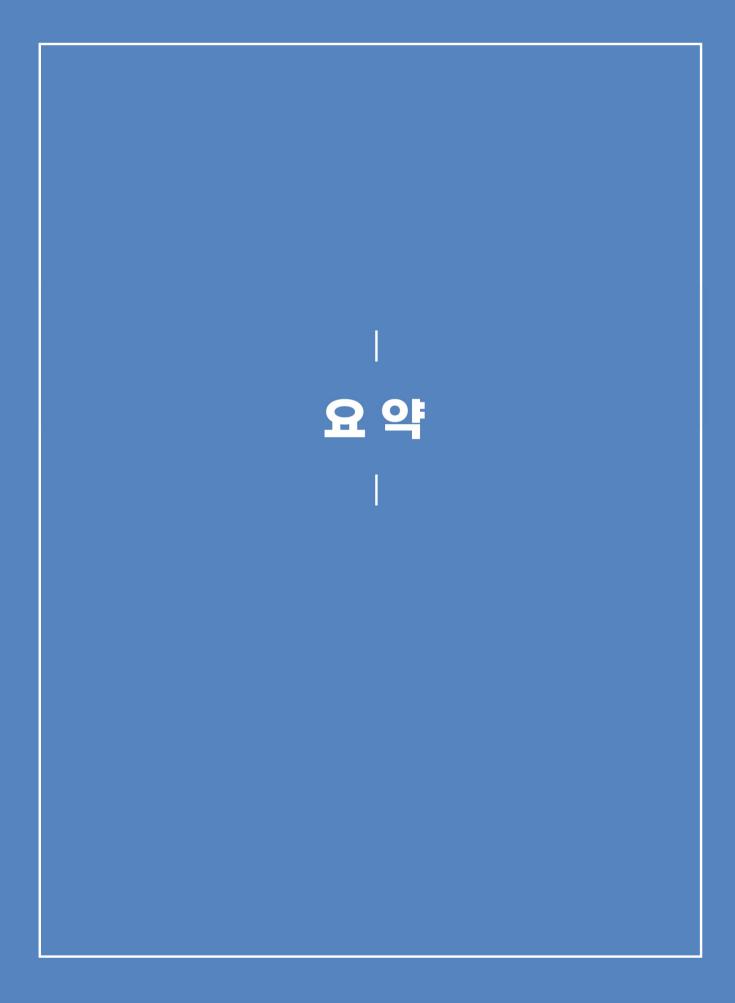
요약

1.	추진배경 2
2.	수립경과 2
3.	5차계획 평가: 주요 성과 및 한계 3
4.	정책 여건 4
5.	비전 및 추진전략
6.	분야별 핵심 과제
7.	기대효과 16
8.	추진체계 및 재정투입 계획 17

본문

I. 제6차 계획 추진배경 및 경과 ·······	20
II. 제5차 계획 평가 ·······	23
III. 정책 여건 ·····	32
IV. 정책방향 및 전략	35
V.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안) ······	38
VI. 실행방안	120





1 추진배경 *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계, 학계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중

구분	1차('98~02)	2차('03~07)	3차('08~12)	4차('13~17)	5차('18~22)
비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적 사회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세부 과제	3대 분야 71개 세부과제	7대 분야 103개 세부과제	4대 분야 58개 세부과제	4대 분야 71개 세부과제	5대 분야 70개 세부과제
주요 정책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문화바우처 도입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 도입	장애등급제 개편, 맞춤형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탈시설·주거지원
참여 부처	3개 부처	5개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 지난 **제5차 종합계획**('18~'22)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발전방향 정립 필요

2 수립배경

*

-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연구 추진(~'22.11)
 - (사전 준비) 본격적인 연구 수행에 앞서, 제6차 계획 수립 방향,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방안 등 사전 검토('22.2~4)
 - (실무추진단) 5차계획 평가 및 6차계획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과제 발굴·조율 등 논의를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운영('22.5~11)
 - * (구성) 학계 전문가, 장애인 대표단체, 복지부 및 관계부처, 연구진 등 참여
 - (장애계 과제 제안) 장애계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실무추진단 총괄위원회에서 장애계 제안과제 발표 및 논의(9월)
- ☑ 관계부처 등 협의·조율 및 대국민 의견수렴('22.11~'23.1)
 - (종합계획 협의·조율) 주요부처 수립연구 참여(5~11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11.29) 논의 등 통해 장애계·관계부처 협의·조율
 -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23.1.31)를 통해 장애계·대국민 의견수렴

3 5차계획 평가: 주요 성과 및 한계

- (주요성과) 장애등급제 폐지('19.7),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21.8),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 ('21.8) 등 주요 정책과제 대부분 기간 내 달성
 - 31년 만에 **장애등급제**(1~6급) **폐지**하여 **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종합지원조사 단계적 도입**^{*} 추진('19.7)
 - * 일상생활 지원('19) → 이동 지원('20) → 소득·고용지원('22, 시범사업)
 -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마련** ('21.8) 및 **시범사업 추진**('22~24)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 및 장애인일자리 지속 확대^{**}
 - * ('18) 25만 → ('19.4) 생계·의료 30만 → ('20) 교육·주거급여·차상위 30만 → ('21) 전체 30만원
 - ** ('18) 17천명 → ('20) 22천명 → ('22) 27.5천명으로 5년간 약 1만명 증가
 - GDP 대비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비율*은 '22년 0.72%(추정치)로 '12년 0.58% 대비 큰 폭으로 증가(OECD SOCX)
 - * ('02) 0.41% → ('12) 0.58% → ('17) 0.62% → ('22) 0.72%(추정치)
 - 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예산도 '17년 2조 7억원에서 '22년 4조 854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
- (한계)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개별 장애인 욕구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 이용 한계
 - ICT 기술 발전 등 사회·기술적 변화로 장애인의 일상의 삶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도 지속 확대·강화할 필요
 - **장애계 요구**에 따라 추진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등 과제는 **진행 중**으로, 6차계획에서도 지속 추진 필요
 - 장애인 삶의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향상되었으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등으로 **악화된 지표** (의료 이용 등) 개선 필요
 - 전반적인 재정 투입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2.14%, '22년 추정치) 대비 3분의 1 수준* 이며. 전체 사회지출 대비 증가폭 완만**
 - * 스웨덴 3.84%('17), 독일 2.25%('17), 영국 1.86%('17), 일본 1.08%('17), <u>평균 2.14%('22 추정)</u>
 - ** GDP 대비 사회지출(공공+법정민간) 비율: ('12) 9% → ('17) 10.9% → ('20) 15.6%(예측치)

4 정책 여건 **

™ 전체 등록 장애인구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 1인 가구,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 증가 등 장애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음

- 전체 장애인구는 265만명('21)으로 '15년 이후 소폭 증가 추세이며, 장애 인구의 고령화, 장애인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뚜렷함
 - * 등록장애인 수(만명) : ('15) 249 → ('17) 255 → ('19) 261 → ('21) 265만명 노인 비율: ('14) 43.3% → ('20) 49.9% / 1인가구 비율: ('14) 24.3% → ('20) 27.2%
- 지체장애 등 전통적 다빈도 유형은 감소, 발달장애 비율 증가 추세
 - * 지체장애 비율: ('11) 52.9% → ('21) 45.1% / 발달장애 비율: ('11) 7.3% → ('21) 9.6%
 - 발달장애는 타 장애유형 대비 **평생에 걸쳐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일반 장애 32.1%, 발달장애 70%), **돌봄 수요 증가 예상**
- - * 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소득보장(49.8%)이며,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 순으로 나타남('20년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 권리의식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이용자 욕구 기반으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요구 증대
 -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생활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 수요**도 **지속 확대**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장애인은 감염취약계층**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이 확인('20.12. 감염병예방법 개정)
- □ 편의시설 설치 확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이동편의 제공 확대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약 요인은 여전한 수준
 - * 교통수단 이용 시 39.8%가 어려움을 느끼며, 주된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52.6%), 전용교통수단 부족 (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 순
-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06) 이후 국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은 수동적 보호(protection)에서 능동적 참여 중심 지원(active support)으로 전환 추세

비전

5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목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정책방향

- (약자복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
- (사회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글로벌 스탠다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

• 8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 주거 결정권 강화

-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

□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고등 · 평생교육 기회 확대

30대 중점 과제 .

9대

정책

분야

74개 세부 추진과제

⑤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 · 관광 여가 확대

-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지원 확대
-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반 확충

□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이동 보장
-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 의료체계 강화

-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
-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 · 직업훈련 확대
- 장애인 벤처 · 중소기업 지원

③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 · 미디어 참여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 ICT기반 정보격차 해소 · 사회참여 확대
-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③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
-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및 차별 해소
-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장애 개념 확대
- 장애인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 장애인권리보장원 설치

1.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및 주거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6

-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낮 활동 등 **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및 품질 개선 지속 추진 필요
- 장애인 욕구에 맞춰 **서비스 다양화 및 질 제고 지속 추진**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 도입 필요**
- 법적 근거 마련('22.6)에 따라 24시간 돌봄, 1인 집중 서비스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체계 마련 필요('24.6)
- 장애인 의사를 따른 주거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22~'24) 결과 분석을 통해 자립 지원 중장기 로드맵 보완 필요

- (활동지원)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지속 확대(연 8천명 규모) 및 물가인상, 최저임금 등 고려해 서비스단가 인상 추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확대 등 **서비스 다양화** 및 **장기요양기관을 활동지원 기관으로 추가 지정** 하는 등 **서비스 선택권 확대 추진**('23)
- (개인예산제) 활동지원 급여 중심으로 모의적용 연구('23) 거쳐 시범사업('24~25), 입법 추진 ('23~), 시스템 구축('25~26) 거쳐 본사업 추진('26)
 - * 시군구 확대(안): ('23) 4개(모의적용) → ('24) 8개 → ('25) 17개 → ('26) 전국 확산
 -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급여 일정액을 공공·민간서비스 구매 및 필요서비스 제공인력(간호, 보행 지도 등) 이용에 활용 가능
- (장애아동)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속 확대 추진 및 장애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現 만 6세 미만) 상향 검토 추진
 -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규모(목표) : ('23) 79천 → ('27) 100천명 장애미등록 아동의 지원 연령 상향(6세 → 9세 미만, 1.6만명) 위한 법 개정 검토
 - 중증장애이동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의 **서비스 이용시간 단계적 확대** 추진('23. 960 → '27. 1,440시간/연)

- (최중증 발달장애인) 최중증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24시간 지원체계 구축('24.6)
 - 시행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광주광역시, '22~) 전국 확대 추진하고, 24시간 재가지원, 심야시간 보호서비스 개발 등 추진
 - 최중증 1인 집중서비스 확대 및 최중증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복지관 지원 등 통해 최중증 발달 장애인 1:1 낮활동 지원 강화
 - **사각지대 발달장애인·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22~)
- (낮 활동)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지원대상 확대('23. 2만 → '27. 3.2만명) 및 제공시간 지속
 확대 추진(주간활동 日 9시간, 방과후활동 日 4시간 제공)
 - * '23년 단축형 폐지, 기본형(132)・확장형(176시간) 개편하여 日 8시간 서비스 보장
 - 방과후 1인 집중서비스 도입 등 **낮 활동 서비스 고도화**하고,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시 일시적(7일) 으로 24시간 돌봄 제공하는 **긴급돌봄 도입**('23)
- (자립 및 주거결정권 강화)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22~24) 성과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 보완, 본사업 추진('25)
 - * 시범사업 참여자 수(누적): ('22) 200명 → ('23) 400명 → ('25~) 본사업 추진
 - 희망하는 거주시설의 전환 지원(기존 대규모 거주시설 → 소규모, 의료집중형 전문기관 등)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지속 지원**(수도권 8%, 비수도권 5%), **장애 친화형 주택개량(개조) 도시지역 확대^{*} 추진**
 - * (~'22) 농어촌지역 가구 지원 → ('23) 도시지역 500호 → ('27) 도시지역 600호/연
- (서비스 기반 고도화) 활동지원 제공기관 평가체계 개선 및 주간·방과후활동 평가체계 도입, 보수 교육 확대 등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지표 개발 연구**('23)를 거쳐 **고시개정** 전문위원회(2기) 구성·운영('23)
 - 장애 인정이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유형 인정기준 개선연구** ('23~24)를 거쳐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25~)

2. 지역사회 기반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및 의료접근성 강회를 위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17~), **장애인** 건강주치의(시범사업, '18.5~) 등 건강보건관리 추진 중
- 민간인프라가 부족한 어린이 등 **장애인 재활치료 강화**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18~). **재활의료기관 운영**('20~, 45개소) 중
 - 재활치료 이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재활운동·체육 제도화 필요**
- 장애인의 질병·장애의 예방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 및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신의료기술, 보조기 등 기술개발(R&D) 활성화 중요

-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라 **체계적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5개년 종합계획 마련
-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권역재활병원('23. 7개소 → 9개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23. 3개소 → 13개소) 단계적 개원 추진
 - **재활운동 논의협의체 운영**('24~), 전문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재활운동**· 체육 활성화 추진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확대('23)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등 거쳐 본사업 전환('25) 추진
- (장애친화 건강인프라) 공공검진기관을 장애친화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26. 86개†), 구강진료센터
 ('23. 14 → '27. 17개소), 산부인과('23. 10 → '27. 15개소) 지속 확충 추진
- (보조기기) 지원품목 지속 확대('23. 38 → '27. 46개) 및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보조기기센터 확충(분소 설치) 추진
- 장애인의 건강회복 및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등 장애인 최적화 기술 연구 개발(R&D) 추진('23년 예타 추진)
 -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기술개발**('24~'28), **돌봄로봇· 서비스 실증연구**('23~'27) 등 추진

3.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및 학생 수는 지속 증가 추세(특수교육대상자:
 '18. 90.8천명 → '22. 103.7천명)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수(명)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수(명)	6,212	6,521	6,975	7,566	8,607

- 장애인의 취업률·진학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졸업 후 취업이 단순노무 직종에 치중되어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직종 다양성 부족^{*}
 - * 고교졸업자 취업직종('22): 제품 제조 19.7%, 식음료 서비스 16.8% , 청소·세탁 15.2% 등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체계는 미비, 평생교육도 저조한 수준(평생교육 참여율: 장애인 0.9%('20), 전체 성인 30.7%('21))

- (보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 완화**,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등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지원 강화
 -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규모: ('23) 1,650개소 → ('27) 1,970개소
 - ** 정밀검사비 지원기준: ('23) 건강보험 소득 하위 80% → 소득기준 삭제(100%) 추진
- (특수교육) 일반-특수교사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23. 120 → '27. 200교),
 우수사례 확산, 교원 연수 등 통해 통합교육 내실화
 -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위해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확대 추진
 - 체험형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졸업 후 지역기반 교육 기회 확대,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설계 지원 등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지원 강화
- (고등교육)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설치('23~),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 확대('23. 10 → '27. 15교), 발달장애인 교육모델 개발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
-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단계적 확대('23. 53 → '27. 100개 목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학습 접근성 제고 등 평생교육 기회 확대
 - *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지자체(특별자치시 포함) 지원

4.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추가지출 보전 등 위해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중증), **장애수당**(경증) **지원**→ 물가인상 등 고려, **급여액 인상** 등 **지원 확대 필요**
- 현재 근로하지 않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약 30만명)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 및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신규 직무 수요 증가**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하고,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 · 품목 경쟁력 강화 필요

- (장애인연금·수당) 물가인상 반영하여 지원단가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개선 검토
 - * '23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5.1% 인상(최대 급여액 387,500원 → 403,180원)
- (장애인일자리)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23. 3만 → '27. 4만명),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소득 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 지원 추진('24)
 - (직업재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수행인력 처우개선^{*} 및 현장중심 직업훈련 확대('22. 1.2천 → '27. 1.9천명), 종합 발전계획 수립 추진('24)
 - *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진적 인상 추진('23. 84% → '27. 100%)
-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상향('23. 1% → 2%) 및 이행 독려하고, 생산품목
 다양화, 컨설팅 등 통해 판매 활성화 지원
- (고용기회)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및 지급 규모 확대, 공공부문 고용의무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기준 강화(^{*}23. 100%) 통해 장애인고용 확대 독려
 - * 월 지원단가: (輕) 男 30→35만, 女 45→50만원 / (重) 男 60→70만, 女 80→90만원('23)
- (고용지원) 디지털 훈련센터 단계적 확충('23. 6 → '27. 17개소 운영)하고, 근로지원인·보조공학
 기기 지원 확대*. 출퇴근 비용지원 확대** 등 근로자 지원
 - * 근로지원인: ('22) 10천 → ('23) 10.5천명 ** 보조공학기기: ('22) 13천 → ('23) 14천점
 - ** ('2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23)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 근로자

5. 체육·관광 등 장애인 일상 속 여가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22. 77개소) 운영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중('22. 8.7천명)
 - **장애인 맞춤형 체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30.5%, 주 1회 이상)은 비장애인 대비(61.2%) 낮은 수준('22)
-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22. 112개소), 지역 내 관광자원·편의시설을 연계한 무장애 관광도시 개발 추진('22~23, 1개소)
 - **무장애 관광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관광지역 내 편의시설 연계 및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종사자 장애인식개선 등 개선 필요

- (생활체육) 시군구 단위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반다비 체육센터') 지속 확대^{*} 및 장애인체육 가상 현실체험관 확충 추진 등 생활체육 기반 강화
 - * 건립 선정된 반다비 체육센터 수(누적): ('23) 91개 → ('27) 150개소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확대**('22. 2400여개 → '27. 7,500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23. 14 → '27. 26개소) **추진** 등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 (무장애관광) 장애인 맞춤형 열린관광지 지속 확대('23. 132 → '27. 252개소) 추진 및 旣 조성
 시설 모니터링 등 통해 사후 관리·운영 점검 강화
 - 주요 관광거점 간 이동지원을 위한 버스·미니밴 도입 등 관광교통환경 개선 및 맞춤형 관광 안내, 보조기기 대여 등 무장애 관광 통합 지원
 - 지역 내 관광자원·민간시설 간 연계 및 접근성 제고하여 관광·이동·숙박·쇼핑 등 누릴 수 있는 무장애관광도시 전국단위 확대 추진
 - *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수(누적) : ('23) 강릉시 1개 → ('27) 13개
 -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맞춤형 투어케어 전문인력 양성**,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확대**(연 1천건) 등 통해 **무장애 관광산업 활성화**
 -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행복나눔여행 지속 지원**(연 500명 규모)

6.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디지털 정보접근을 보장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시설 접근성 문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는 **정체·하락**
 - * 문화예술 관람률: ('17) 6.4% → ('20) 2% ** 문화예술 참여율 : ('17) 3.5% → ('20) 3%
 - 저소득 장애인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등 여가 향유 지원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중('22. 연 11만원 지원)
-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꾸준히 개선('17. 일반국민 대비 70% → '21. 81.7%),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중('22. 3.4천건)
- 기술발전으로 VOD, OTT, 개인미디어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재방송 등 비실시간 방송은 제공 의무가 없고 발달장애인 컨텐츠 미흡

- (접근성 제고) 1차 실태조사('22) 바탕으로 접근성 가이드북(매뉴얼) 제작('23), 배포·교육 ('24~'27). 2차 문화시설 접근성 실태조사('26) 추진
- (접근 지원)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 위해 연구('23),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 검토하고, 농인·시각장애인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 강화
 - * 공공수어통역 지원: ('22) 440 → ('27) 2,000회/연 /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누적): ('23) 10 → ('27) 50개소
- (장애예술인) 표준창작공간 조성 및 단체지원·육성, 우선구매제도 도입 추진(23.上), 유통 플랫폼 구축 등 통해 장애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
- (정보격차 해소) 신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지원^{*}, 장애인 등 신체·인지능력 개선 위한 ICT 융합 기술개발(R&D) 추진('23~26)
 - * 신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연 4건) 및 보급('23. 5.3천 → '27. 7.5천대/연) 지원
- (미디어 접근) 고시 개정^{*}, 인센티브 개선 등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편성 확대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방송컨텐츠 제작·보급 지원 추진
 - * 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5→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 축소(30→25%)
 -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 등 뉴미디어 접근성 제고하고,미디어 나눔버스('23. 288 → '27. 320회) 등 **맞춤형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7.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하고, 편의시설 확대 및 재난안전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는 지속 증가 전망('21. 15.5백만 → '26. 16.8백만명), 저상버스・특별교통
 수단 등 지속 확대에도 장애인 이동권은 여전히 미흡
 - * (국민통합위 이동편의증진특위) 특별교통수단 개선, 대중교통의 UD화 등 5개 과제 제안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확대*('22.5)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
 확대(21.12, 공공 신축 → 공공·민간 신·증축 등)
 - *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 강화)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300㎡→50㎡, 이·미용원 500㎡→ 50㎡, 목욕장 500㎡→300㎡,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500㎡→100㎡ 이상
-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17~21) 종료 후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원 부족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서 맞춤형 의료·돌봄 지원 필요

- (이동권)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23.1) 및 도입 지원 확대, 저상좌석버스 표준 모델 개발(R&D, '23~'26) 등 이동권 지원 강화
 - * 시내저상버스 도입률(목표): ('23) 34 → ('27) 65%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목표): ('23) 92 → ('27) 100%
 - **非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 상향 추진**('23, 중증장애인 150명 → 100명당 1대) 및 이동지원센터 국고지원, 24시간·광역 이동 등 **지원 확대**
- (편의시설)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23) 및 확대방안 연구('23)를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추가 확대(법령 개정, '24) 추진
 -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23, 복지로 내 복지지도) 및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방안(홍보, 컨설팅 등) 모색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3)으로 **무인정보단말기**(KIOSK)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단계적 확대 추진**('26.1, 전면 확대)
- (BF 의무인증) 민간시설로 인증 확대 추진('23. 연구 → '24. 시행령 개정),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및 인증기관 확대('22. 9 → '27. 15개) 등 인증 활성화
- (재난안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 재난안전 관련 대책 추진 검토 및 지자체에서 재난안전 정보 관리 및 대피 지원체계 마련 독려
 - 국립재활원 내 전담병상 설치('23~24. 28병상), 대응 매뉴얼 고도화('23, 3판), 활동지원 24시간· 긴급활동 지속 지원 등 장애인 감염병 대응 강화

8. 장애인 학대 예방하고 정신·여성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장애인학대 사건은 지속 증가^{*} 추세('18. 889건 → '21. 1,124건)로,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적극 대응 중
-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삭제('23. 개정법 시행)에 따라, 정신장애인 위한 복지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출산비용 지원('22. 100만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중앙1, 지역 17개소) 및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해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 및 건강보건관리 지원 중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06),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계획('13~22) 등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장애인정책분야 국제협력 강화 필요

- (권익옹호) 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 증원^{*} 추진 등 학대 대응체계 강화하고, 실태조사, 대응매뉴얼 개발 등 학대피해자 종합지원방안 마련
 - * 중앙·지역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전담인력 수 : ('23) 총 101 → ('27) 총 122명
 - 발달장애인 사기 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점검 강화, 교육 컨텐츠 개발·홍보 확대('23~)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서비스 실태·제도분석('23.上) 및 정신재활시설 개선, 주거·고용 지원 등 자립 이행방안 마련('23.下)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기능보강 및 확충하고,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강화(동료·가족지원가 양성 등), 인식개선 강화(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24~25)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적극 발굴 및 지원단가 인상 추진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추진 및 평가·컨설팅(3년 주기), 종사자 보수교육 등 통해 서비스 질 제고
-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추진('23. 타당성 연구),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사업 확대 및 오픈이카이브 구축 등 국제협력 강화

9. 거버넌스 강화, 전달체계 개편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06) 이후 **장애 개념은 기존 의학적·기능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로 확장 추세**
 - * (사회적 장애 모델) 구성원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한 사회참여 저해 → 장애 인정
 - ** (독일) 장애란 개인의 신체·정신·정서적 이상과 사회적 참여의 침해에 대한 상호작용, (호주) 핵심활동제한 (의사소통·이동·자기관리), 사회참여제약(고용·학습) 중심으로 포괄적 장애개념 제시
- **장애인정책 총괄 조정**을 위해 **장애계·학계·관계부처 참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00~) **운영** 중이나 사무국 부재 등으로 **활성화 곤란**
- '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후 전달체계가 분절적으로 도입되어 장애정책 전달체계의 파편화 심각
- 장애정책 연구·행정 지원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10~) 운영 중이나, 노인·아동 등 타 분야 대비 기관 조직 및 기능은 다소 부족

- 현행 장애인복지법(제2조) 상 의학적 장애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적 장애 모델 도입 위한 장애인권리 보장법안 국회 논의 지원('23~)
-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혜영('21.9), 김민석('21.10), 최혜영('21.11), 이종성('22.11)
- 다만,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비용 절감을**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개념 및 등록제는 존속
- 장애인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또는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 사무국 신설 등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23~')
 -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보건복지위 심사 중
- 범정부 장애정책 전달체계 점검 연구('24)를 통해 실태 분석 및 분절적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하고 법·제도 개정 추진('25~)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아동 등 **취약장애인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23~, 국회 법안논의 지원)

7 기대효과 *

분야	주요 성과	'23년 ■	'27년	비고	
	장애인 맞춤	형 통합지원 및	및 자립·주거 지원 2	강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모의적용	본 사업('26)		
복지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 연구	서비스 시행 ('24.6)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14만명	17만명	연 8천명 규모↑	
	장애아동 발달재활 지원대상	7.9만명	10만명	연령상향(6→9세) 검토	
	지역사회	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건강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9.4%	61.4%	57.9%('20)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25)	3차 시범사업('21.9~)	
	생애단	계별 맞춤형 교	육지원체계 고도화		
보육・교육	통합교육 연수 이수율	82%	9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수	53개) 100개	32개('22)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경제활동	장애인 빈곤율	39.0%	37.0%	39.6%('20)	
	장애인 고용률	50.6% I	\$1.9%	50.3%('22)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체육·관광	생활체육 참여율	28%	34%	26.6%('22)	
	열린관광지 조성	132개소	🐤 252개소	112개소('22)	
	장애인 문화	예술 향유 및 대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문화예술	예술창작 참여율	1.2%	1.6%	1.1%('20)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82.0%	\$3.6%	81.5%('21)	
	장0	에 이동 및 시	설 접근성 강화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92%	100%	86.0%('21)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	50㎡이상 I	> 50㎡이하		
	장애인	<u> </u> 의 사회참여 및	및 권리 보장 강화		
권익증진 전체기반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률	94%	98%	92.8%('21)	
정책기반	장애 개념 확대	의학적 장애	▶ 사회적 장애		

추진체계 및 재정투입 계획

□ 추진체계(안)

8

- (성과 평가) 9대 정책 분야별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목표(생활만족도, 고용율, 이동·편의 개선 등) 지표 설정 및 성과평가 실시
- (평가체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연도별 주요 정책성과 및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정책 목표 달성도를 평가
 - 매년 제6차 종합계획 이행 수준 모니터링 실시(장애인개발원 위탁)
- (소통 환류) 장애인 당사자, 학계·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활성화 및 장애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소통창구 마련 검토
- □ (재정투입 계획) 제6차 종합계획('23~'27)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 수준(잠정치, 국비 기준)
 - ※ 전체 장애인정책 관련 예산 중 제6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 예산만 포함

〈재정투입 계획(안)〉

(단위: 억원)

구분	총계	2023	2024 ~ 2027
복지·서비스	176,905	24,431	152,475
건강	3,306	757	2,549
보육·교육	1,713	249	1,462
경제활동	108,514	19,942	88,573
문화예술 디지털·미디어	3,170	479	2,692
체육·관광	7,234	1,323	5,912
이동·편의·안전	11,225	2,235	8,990
권익증진	726	104	621
Й	312,793	49,519	263,274

^{*} 연차별 투입계획(안)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문

- |. 제6차 계획 추진배경 및 경과 | 20
- ||. 제5차 계획 평가 | 23
- Ⅲ. 정책 여건 | 32
- Ⅳ. 정책방향 및 전략 | 35
- V.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안) | 38
- Ⅵ. 실행방안 | 120

1. 추진배경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지속 추진

- '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추진 결정('96.12)
- '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중

구분	1차('98~02)	2차('03~07)	3차('08~12)	4차('13~17)	5차('18~22)
비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적 사회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세부 과제	3대 분야 71개 세부과제	7대 분야 103개 세부과제	4대 분야 58개 세부과제	4대 분야 71개 세부과제	5대 분야 70개 세부과제
주요 정책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문화바우처 도입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 도입	장애등급제 개편, 맞춤형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탈시설·주거지원
참여 부처	3개 부처	5개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발전방향 정립 필요

○ 개인예산제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 그간 제도 변천사

71	간	80~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 1		00 0004	2000년세	장애인연금법('10.4)
	법률 정	특수교육진흥법('77.12) 장애인복지법('81.6) 장애인고용법('90.1) 장애인등편의법('97.4)	교통약자법('05.1) 장애인기업법('05.7) 장애인차별금지법('07.4) 특수교육법('07.5) 중증장애인생산품법('08.3)	장애인활동법('11.1) 장애아동복지법('11.8) 주거약자법('12.2) 발달장애인법('14.5) 장애인건강권법('15.12) 장애인보조기기법('15.12) 한국수화언어법('16.2), 점자법('16.5) 장애예술인지원법('20.6)
		장애유형 확대 ('00. 5개 → 10개)	장애유형 확대 ('03. 10개 → 15개) 장애등급심사제도('07)	장애등급제 폐지('19.7) 서비스지원 종합조사('19.7)
주요 정책 성과	복지 건강	장애인보조기기('82)	권역재활병원('05) 활동지원 시범사업('07) 장애아동 발달재활('0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09)	장애인 활동지원 본사업('11) 행동발달증진센터·거점병원('16)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충('18)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18)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19)
		장애수당 도입('90) 장애인 의무고용제도('91) 장애인 고용장려금('91) 직업재활시설('00)	보조공학기기('04) 장애인일자리('07) 장애인 표준사업장('0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08)	장애인연금 도입('10)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10) 출퇴근 비용지원('21) 신규고용장려금 한시도입('22)
	교육 문화 여가	특수학교·학급('79)	장애아동 부양수당('02) 통합문화이용권('06)	장애아동 양육수당('12) 장애인문화예술센터('15) 장애학생 거점지원대학('18) 장애인스포츠이용권('19) 장애인 평생학습도시('20) 장애인형 생활체육센터('22)
		신·중축 공공건축물 편의 시설 설치 의무화('98)	저상버스 시범 도입('03)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0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08)	특별교통수단('13) BF 인증 의무화('15)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제도('15) 이동지원 종합조사('20) 소규모 공중이용시설(50㎡ 1) 편의시설 설치 확대('22)
	권익 증진		장애인식개선교육('07)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08)	장애인학대피해 신고의무제('12)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13) 학대피해 장애인('17)·장애이동('21) 쉼터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21) UN CRPD 선택의정서 가입('22)
전달	체계	장애인복지진흥회('89) 장애인고용공단('90)	BF 인증기관 지정('07) 특수교육지원센터('07) 장애인개발원 출범('08) 장애인보조기기센터('09)	발달장애인지원센터('16) 장애인권익옹호기관('17) 장애인보건의료센터('18)

2. 수립 경과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연구 추진(~'22.11)

- (사전 준비) 본격적인 연구 수행에 앞서, 제6차 계획 수립 방향,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방안 등 사전 검토('22.2~4)
- (실무추진단) 제5차 계획 평가 및 제6차 계획 정책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발굴 등 논의를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운영('22.5~11)
 - * (구성) 학계 전문가, 장애인 대표단체, 복지부 및 관계부처, 연구진 등 참여
 - (운영 현황) 총 7차에 걸친 총괄위원회와 10개 정책분과별 회의, 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등 마련·조율
 - * 총괄위원회 추진경과 : (5월) 추진단 운영방안 및 5차 계획 종합평가 → (6~8월) 제6차 계획 수립방향 및 비전체계, 목표 도출 → (9~10월)과제 발굴 및 성과지표 마련 → (11월) 총괄 정리
- (장애계 과제 제안) 장애계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실무추진단 총괄위원회를 통해 장애계 제안과제 발표 및 논의('22.9)
 - 5차 종합계획 평가를 바탕으로 6대 정책목표 23개 중점과제 108개 실행과제 제안 → **전문가 검토**를 거쳐 **6차 계획(안) 반영**(76개)
 - 연구 결과. 종합과제와 10대 분야별 추진과제 116개 세부과제 도출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 조율·마련('22.11~'23.3)

- (부처 협의) 수립연구 과정에서 관계부처 소관부서 참여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논의(11월), 부처 회의(12월) 등 관계부처 협의
 - 부처협의 결과, **과제 조정** 등을 거쳐 **9대 분야별 74개 추진과제** 마련
- M6차 종합계획(안) 주요과제 중심으로 공청회 개최(23.1.31)
-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개최, 심의· 의결 및 발표('23.3월 초)

1. 추진 개**요**

☑ (주요과제)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수립·추진
 - ① (복지·건강)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복지서비스와 건강 지원 제도 확충
 - ② (교육·문화·체육)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문화. 체육 등의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
 - ③ (경제활동)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근로능력 상실 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및 현금급여 등 소득 보장 확대
 - ④ (권익·안전) 취약한 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해 사회적 차별인식 개선 및 재난·안전 보호, 발달· 여성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의 권익·안전 강화
 - ⑤ (사회참여)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이동·시설편의 등 분야별 접근성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 이행 점검

- 제5차 계획 수립 후 **부처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이행사항, 연차별 계획을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통해 **매년 점검**('18~)
-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하여 성과목표 달성률, 계획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등 **중간평가 실시(**'21)
 -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연구('21.11월) 결과, 전반적으로 정부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나 부처 간 협력 강화, 사업 효과성 검증 등 일부 보완 의견

맲

2. 주요 추진성과 및 한계

○ 장애인정책 재정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며 서비스 분이에 집중 투입하여 현물과 현금의 급여 지출이 균형을 이름

- GDP 대비 장애인정책 지출 비율^{*}은 '22년 0.72%(추정치)로 '12년 0.58% 대비 큰 폭으로 증가 (OECD SOCX)
 - * ('02) 0.41% → ('12) 0.58% → ('17) 0.62% → ('22) 0.72%(추정치)
 - 그러나 **OECD 평균**(2.14%, '22년 추정치) 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빠르게 증가하는 **전체 사회** 지출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폭 완만**
 - * OECD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17): <u>평균 2.14%('22 추정)</u>, 스웨덴 3.84%, 독일 2.25%, 영국 1.86%, 프랑스 1.7%, 미국 1.06%, 일본 1.08%, 한국 0.72%('22 추정)
 - ** GDP 대비 사회지출(공공+법정민간) 비율: ('12) 9% → ('17) 10.9% → ('20) 15.6%(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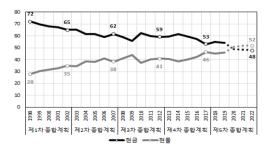
GDP 대비 장애인정책 지출 비율(%)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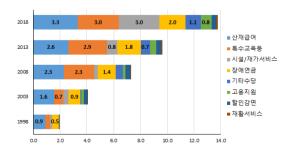


- 활동보조, 낮활동 지원 등 **현물급여 증심**으로 정책 지출이 증가, '20년 기준으로 현금 지출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OECD SOCX)
 - * 장애인정책 지출 추이: ('08) 7.3조 → ('13) 9.6조 → ('18) 13.8조원(4.2조원 ↑)
- 기능별 지출 구성은 시설·재가서비스('13. 0.8조 → '18. 3.0조), 산재급여('13. 2.6조 → '18. 3.3조), 기타수당('13. 0.7조 → '18. 1.1조) 순으로 증가

현금-현물 지출 비율(%)



장애인정책 기능별 지출 구성(조원)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예산은 '17년 2조 7억원에서 '22년 4조 854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
 - * ('08) 6,725억원 → ('13) 1조 1,003억원 → ('17) 2조 7억원 → ('22) 4조 854억원
 - 주로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돌봄 등 **돌봄제도 확대** 및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등 소득보장 강화 결과로 보임
 - * 활동지원: ('17) 5,461억 → ('22) 1조 7,405억원/ 장애인연금: ('17) 5,600억 → ('22) 8,326억원

집 장애인 정책 대상 확대, 지원 수준 및 인프라 접근성 지속 향상

- 장애등급제 폐지(19.7) 후 장애인 활동지원(17. 87천 → '21. 127천명), 발달재활(17. 53천 → '22. 69천명) 등 서비스 대상 지속 확대
 -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도입** ('19) 및 **지원 확대**('22. 20천명)
 - 중증장애인 고용지원('17. 2.8천 → '21. 6.3천명) 및 근로지원인('17. 1.5천 → '21. 12.4천명), 장애인일자리('17. 16천 → '22. 28천명)도 대폭 확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단계적 인상***하여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인 **36.2만명**('22. 기준)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 * ('17) 20만 → ('18) 25만 → ('19)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만 → ('21) 전체 30만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19.7) 후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 확대(119.4 → 139.9시간) 및 시간당 단가 인상('17. 9,240원 → '22. 14,800원)
-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17. 964 → '21. 1,002개) 및 제공인력('17. 63천 → '21. 95천명)
 대폭 확대, 주간보호시설('17. 690 → 21'. 818개소)도 증가
 - **장애이통합어린이집**('17. 946 → '21. 1,317개소), **특수학교**('17. 173 → '22. 192교), **특수학급** ('17. 10.3천 → '22. 12.7천개) 등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 법률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등

-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 후 장애계·학계·부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17.10~'18.7), **관계** 부처 시행준비단 운영('18.5~) 거쳐 '19.7월 **장애등급제 폐지**
 - * 종전 장애등급(1~6급) 폐지 및 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종합지원체계 도입
-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여,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생계급여 지급('20.1)

- **감염병예방법 개정**('21.6)하여 **'감염취약계층'에 장애인 추가**하고, 장애인 맞춤형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1판 '20.6, 2판 '21.4)
-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 장애인법 개정('22.6)
-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법 개정('22.5)

公

- 장애등급제 폐지('19.7),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21.8),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21.8) 등 주요 정책과제 대부분 기간 내 달성
- 전반적인 재정 투입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개별 장애인 욕구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 이용 한계
- ICT 기술 발전 등 사회·기술적 변화로 장애인의 일상의 삶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도 지속 확대·강화할 필요
- 장애계 요구에 따라 추진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등 과제는 6차 계획에서도 지속 추진 필요
- 장애인 삶의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향상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악화된 지표도 있어, 정확한 성과 진단이 어려움
- 다만,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악화된 장애인 삶의 질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집중할 필요

3. 분야별 성과 및 한계

3-1. 복지·건강 분야

□ 주요 성과

- 31년만에 **장애등급제**(1~6급) **폐지**하여 **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종합지원조사 단계적 도입*** 추진('19.7월)
 - * 일상생활 지원('19) → 이동 지원('20) → 소득·고용지원('22, 시범사업)
 - **장애계·학계·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장애인권리보장법 추진방안 마련**('21.8, 제23차 장애인정책 조정위), 관련 법률안 **국회 발의·논의*** 중
 - * (보건복지위 발의) 장혜영('21.9), 김민석('21.10), 최혜영('21.11), 이종성의원('22.11)
-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마련 ('21.8) 및 시범사업 추진('22~24)
-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 인상*** 및 **대상 지속 확대****하고,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지원**('23~) 등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강화**
 - * 단가: ('17) 9,240원 → ('22) 14,800원/시간 ** 수급자 수: ('17) 87천 → ('21) 127천명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

■ 장애인활동지원단가 13,500 원 9,240 원

2020

2017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수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확대**(3차 시범 사업, '21.9월~) 등 **의료접근성 지속 강화**
 - * 병원 4개소, 센터 9개소 지정·건립 추진 중('22)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7개소 지정('22)
 - 코로나19 유행에 대응, **돌봄 공백 방지***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의료지원**, **대응 매뉴얼 배포** ('20.6월. 2판 '21.4월) 등 지원 강화
 - * 확진 시 활동지원 24시간 제공('20.2~), 비수급자 긴급활동급여 지원('20.12~),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21.1~) 등
 - ** 장애인 전담병상 운영(국립재활원, '21.1~'22.5), 가산수가 한시적 신설('21.1) 등

2022

▷ 한계

-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이후에도 장애계 내 갈등 존재, 조정 요구, 자립 장애인 주거확보 위해 관계 기관(국토부, LH) 간 공조 강화 필요
-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
 - * 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 지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산부인과 운영 활성화 미흡

3-2. 교육·문화·체육 분야

□ 주요 성과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 장애아 보육료 및 특수교사·치료사 처우개선** 등 통해 장애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질 향상
 -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수: ('18) 1,136 → ('19) 1,148 → ('20) 1,160 → ('21) 1,172개소
 -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인상(40만원), 인건비 지원 등
 -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유치원, 특수학교·특수학급 등 교육 인프라 지속 확충, 특수교육교원 증원, 특수교육 연수 확대 등 전문성 제고
 - ※ 유치원 특수학급: ('18) 853 → ('19) 949 → ('20) 1,086 → ('21) 1,228 → ('22) 1,437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진로 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 진로·직업지원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방안**('20~22) 수립('19.12) 등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2~'26) 수립('22.9월),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무장애 온라인서비스(이음온라인) 활성화 등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
 - 열린관광지 지속 확대 및 무장애 여행코스 개발, 무장애 관광플랫폼 구축, 지자체·종사자 교육 확대 등 관광 접근성 제고
 -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설**(19~) 등 체육 지원 강화

▷ 한계

- 장애유형·정도별 교육 선택권 보장 및 통합교육 교원 역량 강화, 지역 연계 진로 지원 확대, 고등·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전달체계 고도화 필요
- 장애 유형·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 문화예술 등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 **여가활동 증진 미흡**
 - * 생활체육 참여율: (주 1회 이상) 30.5%('22) / 문화예술 관람률: 2.0%('20)

3-3. 경제활동 분야

□ 주요 성과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기초급여액 지속 인상*을 통해 장애인 소득지원 강화
 - * ('17) 20만원 → ('18) 25만원 → ('19.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만원 → ('20.1.)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 ('21) 전체 30만원
 - 장애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인상**(17. 월 20만 → 22. 22만원)
 -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 반영한 **새로운 소득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21)를 거쳐 **장애인 소득** 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22~) 추진 중
- 장애인고용법 개정('21.7월)을 통해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18. 2.9% → '22. 3.6%)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20~),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21. 60만명), **출퇴근 비용지원 신설**('21) 등 장애인 취업 지원 강화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지원**을 위해 **맞춤형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지속 확대**
 - * 참여자 수: (18) 17천명 → (20) 22천명 → (22) 27.5천명으로 5년간 약 1만명 증가
 - 신·증축 등 **기능보강 및 컨설팅 지원**, 제조·가공시설 등 **설치 근거** 마련('21.6)을 통해 **직업재활** 시설 활축 및 **이용자 수 확대***
 - * 시설 수 : ('18) 651개 → ('21) 773개소, 장애인 이용자 수: ('18) 18천 → ('21) 21천명
- 장애인 **창업 컨설팅·교육*** 및 장애인기업 **공공판로·기술사업화** 지원
 - * 창업 교육 1,151명 수료, 창업컨설팅 248명 지원 및 95명 사업화 비용 지원('22. 기준)

□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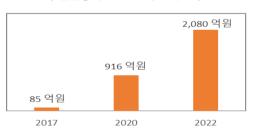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 급여 현실화*** 필요
 -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 중이나 실제 비용 대비 부족한 수준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제고하고, 사회·기술적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 인프라 및 공공 일자리 지속 확대 필요

3-4. 권익증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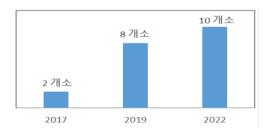
□ 주요 성과

- 장애 차별인식 해소 및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21~25) 수립・발표('21.8)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21.6월) 및 **교육콘텐츠 개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치**('22) 등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 강화**
 - *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2개 직종 종사자
-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17~'21)('17.9) 및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19.12) 수립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재난안전 지원 강화**
 - 장애인등편의법 개정(18.8)하여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구유도등 설치 등 경보·피난 설비기준 강화
 -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진·화재 등 **재난대응 안내서 개발·보급**('20.8)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18.9),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확대(관련 예산: '17년 85억 → '22년 2,080억원)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9.3) 및 방과후활동('19.9) 서비스 도입,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16. 2개 → '22. 10개소) 등

〈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규모 〉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 수 〉



○ 모성권 보호를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추진**('21~)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상담 지원

□ 한계

- **장애인 학대 예방·발굴**을 위한 **제도·지원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사례관리 지속** 확대 필요
- 종합대책 종료 후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부처별로 이행하였으나, 호우, 화재 등 재난상황 시 장애인 맞춤형 안전 지원 취약 우려
- 평생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수립** 필요

3-5. 사회참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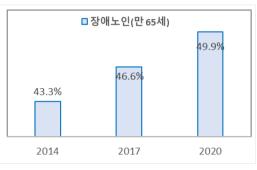
□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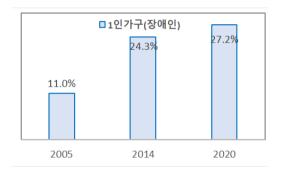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21.7)을 통해 무인정보단말기(KIOSK), 모바일 앱(App)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 기반 마련
 -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21~'25) 수립('21.10), 장애인방송 제작,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보급('21.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100%) 등 지원
- 교통약자법 개정('21.12)하여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고, 저상버스, 특별교통 수단 도입 지속 확대^{*}
 - * 총 도입수('21) : 저상버스 10,828대(도입률 30.6%), 특별교통수단 4,074대(도입률 86%)
 -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장애물 없는 이동환경 조성 등 담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수립·발표('22.9)
- O BF 인증 의무대상시설 확대(국가·지자체 → 공공기관 등, '21.12),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설치
 면적기준 강화(300 → 50㎡, '22.5) 등 기준 강화
 - 전동보장구 충전기기 설치 확대('20년 2천개),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지원제도 신설 등 장애인 편의 증진
-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전략('13~22, 인천전략) 주도국으로, 장애포괄적 ODA 사업 등 아·태지역 장애인 선도사업 추진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이행상황 국가심의 참석('22.8) 및 심의 최종견해(권고사항)에 대한 정부 이행방안 마련 추진('22.下~)

▷ 한계

-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및 다변화·지속 확충, 휠체어 이용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확대,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 필요
-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대는 미흡**, 인센티브 도입 등 **적극적인 인증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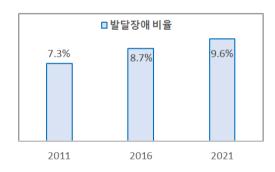
- ™ 전체 등록 장애인구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 1인 가구,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 증가 등 장애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음
 - 전체 장애인구는 265만명('21)으로 '15년 이후 소폭 증가 추세
 - * 등록장애인 수(만명) : ('15) 249 → ('17) 255 → ('19) 261 → ('21) 265
 - ** OECD 국가 장애 출현율('20) : <u>평균 24.1%</u>, <u>한국 5.4%</u>, 일본 7.6%, 미국 12.7%, 스웨덴 12.9%, 호주 17.7% EU 국가 장애 출현율('19) : 평균 24.6%
 - 장애 인구의 고령화. 장애인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뚜렷함





-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특히, **1인 가구 중 장애노인 비중**이 지속 증가('14. 59.6% → '20. 61.9%)
 - 지체장애 등 전통적 다빈도 유형은 감소. 발달장애 비율 증가 추세





- 전체아동 중 장애아동의 비율은 증가('11년 0.79% → '20년 0.98%), 장애아동의 주된 장애
 유형은 지적·자폐성장애(67.5%)
- 발달장애는 타 장애유형 대비 **평생에 걸쳐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돌봄** 수요 증가 예상
 - * 일상생활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 : 일반장애 32.1% vs 발달장애 70%

- ☑ 소득, 의료, 주거, 고용 등 전통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도 강하게 표출
 - **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소득보장**(49.8%)이며,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 (3.6%) 순으로 나타남('20.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 빈곤율(42.1%) 전체인구 빈곤율(16.3%) 대비 3배 수준으로,장애인 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소득은 낮으나, 식·주거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20. 가계금융 복지조사)
 - * 장애인가구 연평균 소득은 4,246만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5,924만원의 71.7% 수준
 - ** 장애인 소비지출 비율 중 식·주거비 44.6%, 의료비 11.6%은 전국가구 대비(식·주거비 41.8%, 의료비 6.7%) 지출 비율이 높음
 - 장애인은 전체인구 대비 **의료기관 이용 일수**(2.5배) 및 **1인당 진료비**(3.3배) **모두 높은 수준**임 에도 **미충족 의료율**(5.5배)**도 높음**
 - * 의료기관 이용 일수: 장애인 58.5일, 전체인구 23.5일 / 1인당 진료비: 장애인 632.4만원, 전체인구 190.7만원 / 미충족 의료율: 장애인 32.4%, 전체인구 6.6%('19.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 획일화된 서비스 품질 및 제공방식, 종사자 처우 문제 등 등 사회서비스 제도를 혁신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필요
 - 장애인 권리의식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이용자 욕구 기반으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요구 증대
 - * 주요 해외사례: 영국(개인예산제), 독일(개인예산제), 스웨덴(활동보조예산) 등
 -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생활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 수요**도 **지속 확대**
 - *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대학·전공과) : ('17) 46.3% → ('20) 50.9% → ('22) 56.2%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관람율: 58.1%('19) / 문화예술행사 관람의향율: 65%('19)
 - 지난 계획에서 추진된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 권리보장법 제정** 등은 **장애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됨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발의: 장혜영('21.9), 김민석('21.10), 최혜영('21.11), 이종성('22.11)
- □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은 감염취약계층**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이 확인됨
 - 코로나19 확진된 장애인을 1:1 관리하고 활동지원 24시간 제공, 긴급활동급여 지원('20.12~), 인센 티브^{*} 지급('22.3~) 등 통해 돌봄공백 방지
 - * 활동지원사가 확진·자가격리 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택치료·격리기간(7일) 내 1일 48 천원, 최대 336천원 한시 지원

- 장애인 등 백신 및 방역 우선지원*,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배포('20.6~), 국립재활원 내 전담 병상 운영('21.1~'22.5) 등 의료지원 강화
 - * (주요 지원내용)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이용자 백신 우선접종 실시, 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PCR), 장애인직업재활시설(691개소) 방역장비 지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550만개, '22.2월 기준) 등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20.12)로 **감염취약계층에 시설 이용 장애인이 추가**됨에 따라, 감염병 관련 지원 근거 마련
- □ 편의시설 설치 확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이동편의 제공 확대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위한 제약 요인은 여전한 수준
 -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32.1%**로,
 - 교통수단 이용 시 **39.8%**가 **어려움을 느끼며**, 주된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52.6%), **전용교통 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 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비법정단체)는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시위 지속 ('21.12~, 간헐적 중단·재개),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 * "또 출근길 늦어졌다" 전장연 시위에 속타는 시민들…10여분 지하철 지연('22.12.20. 매일신문)
-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06)* 이후 국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은 수동적 보호(protection)에서 능동적 참여 중심 지원(active support)으로 전환
 - * 장애인에 대한 평등과 차별금지, 인식제고, 사회참여 등 주요 권리에 대한 포괄적·종합적 국제조약으로, '06.12월 유엔 채택 후 182국 가입(대한민국 '08년 국회 비준)
 - 장애 개념은 기존 의학적·기능적 장애 모델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구성원 태도, 환경적 장벽으로 사회참여 저해 → 장애)로 확장되는 추세
 - * (독일) 장애란 개인의 신체·정신·정서적 이상과 사회적 참여의 침해에 대한 상호작용, (호주) 핵심활동제한 (의사소통·이동·자기관리), 사회참여제약(고용·학습) 중심으로 포괄적 장애개념 제시
 - 제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13~22, 이하 '인천전략')을 통해 정치 참여, 접근성 강화, 재난 대응, 여성 보호 등 구체적 목표 제시
 - 국제적 장애인 권리보장 요구에 발맞춰, 장애계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장애인권리 보장법 추진방안 발표('21.8)
 - 이후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복수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발의되어 관련 법안들에 대한 **병합심사 추진 중**('22.4~)
 -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혜영('21.9), 김민석('21.10), 최혜영('21.11), 이종성('22.11)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장애영양평가 도입** 및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 역할 강화**, 역할 조정 및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장애 전달체계 구축** 등 논의

*

1. 정책방향

□ 기본방향

- (약자복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두텁게 지원할 필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교육 지원, 장애인연금 확대 등 맞춤형 돌봄·소득 지원 강화
- (사회서비스 고도화)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지원 확대 및 고도화 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 구현 추진
 - 기존 돌봄 제도를 정교화하고 주택·주거지원 확대, 건강권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기반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글로벌 스탠다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따라 평등, 차별금지, 사회참여 등 전 생활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 필요
 - * 장애인 주요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조약으로 '06년 UN 채택 후 182개국 비준 (주요주제) 자립생활. 건강·재활. 교육. 소득. 근로. 정보접근성. 문화·체육. 이동·접근. 안전. 인식개선 등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세부과제 마련

- (비전)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제적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설정
- (총괄 정책목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9개)를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건강, 이동편의, 디지탈미디어 등 새롭게 부각
- 각 분야별 정책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30개 중점과제 및 74개 세부 추진과제, 분야별 성과지표 등 제시

2.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모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정책방향

- (약자복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
- ●(사회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글로벌 스탠다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

9대 정책 분야

분야 . 30대 중점 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 주거 결정권 강화

-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
- □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고등 · 평생교육 기회 확대
- ③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지원 확대
-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반 확충
- □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이동 보장
-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 의료체계 강화

-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
-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 · 직업훈련 확대
- 장애인 벤처 · 중소기업 지원
- ③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 · 미디어 참여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 ICT기반 정보격차 해소 · 사회참여 확대
-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❸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
-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및 차별 해소
-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장애 개념 확대
- 장애인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 장애인권리보장원 설치

3. 기대효과(안)

분야	주요 성과	'23년	\Rightarrow	'27년	비고				
	장애인 맞출	흥형 통합지원	및 자	립·주거 지원 경	강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모의적용	•	본사업('26)					
복지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 연구	>	서비스 시행 ('24.6)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14만명	•	17만명	연 8천명 규모↑				
	장애아동 발달재활 지원대상	7.9만명	>	10만명	연령상향(6→9세) 검토				
	지역사회	회 기반 장애인	인 보건	의료체계 강화					
건강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9.4%	•	61.4%	57.9%('20)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본사업('25)	3차 시범사업('21.9~)				
	생애단	계별 맞춤형	교육지	원체계 고도화					
보육·교육	통합교육 연수 이수율	82%	•	9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수	53개		100개	32개('22)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경제활동	장애인 빈곤율	39.0%	•	37.0%	39.6%('20)				
	장애인 고용률	50.6%	•	51.9%	50.3%('22)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체육·관광	생활체육 참여율	28%	•	34%	26.6%('22)				
	열린관광지 조성	132개소	•	252개소	112개소('22)				
	장애인 문화	예술 향유 및	디지털	g·미디어 참여	확대				
문화예술	예술창작 참여율	1.2%	•	1.6%	1.1%('20)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82.0%		83.6%	81.5%('21)				
		배인 이동 및	시설 집	업근성 강화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92%	•	100%	86.0%('21)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	50㎡이상		50㎡이하					
	장애인	<u>l</u> 의 사회참여	및 권	리 보장 강화					
권익증진 저채기바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률	94%	-	98%	92.8%('21)				
정책기반	장애 개념 확대	의학적 장애	•	사회적 장애					

1. 복지·서비스 분야

1-1.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지속 확대
 - * 대상자 : ('11년) 1급 → ('13년) 2급 → ('15.6월) 3급 → ('19.7월) 전체 장애인 수급자 : '12년5.0만 → '18년9.4만 → '20년11.5만 → '21년12.7만→ '22년 8월13.5만 월 최대 지원시간 : '11년183 → '13년360 → '16년392 → '19년上441 → '19년下~480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 운영**(활동지원 '11~, 낮 활동 '19~, 발달재활 '09~)
- 장애이동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중증장애이동 돌봄, 아동의 기능 향상·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09~)

□ 개선 필요사항

-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지속 확대 필요
 - * 등록장애인(264만명) 대비 활동지원 수급자(12.7만명) 비율(4.8%)이 낮고, 수급자 대비 실제 이용자 비율은 약 86%('22.8월 기준)에 불과
- 서비스 다양화 및 질 제고 등을 통해 장애인 개별 수요에 맞는 서비스 이용 지원 및 선택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
 - * (예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매칭 및 이용률 저하 문제, 의료·긴급응급지원 등 신규서비스 제공 미흡, 조기 노화·고령 발달장애인 맞춤형 낮활동서비스 개발 필요 등
- 돌봄·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 서비스·인프라가 부족한 수준, 돌봄 부담이 높은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 발달재활 대기 인원 8,385명이며, 이 중 86.4%가 장애 미등록 영유아('21) 부모 도움이 필요한 비율: 전체 장애인 20.8% vs 발달장애인 71.4%

집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돌봄·활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지속 확대 추진(연 8천명 규모)
 - **서비스 단가 5.2% 인상**(14,800→15,570원/시간당) 및 **대상자 1만명 확대, 기산급여 단가 인상** (2천→3천원) 및 **대상자 2천명 확대**('23)
 - **안정적 제공인력 수급***을 위해 최근 단가 인상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기본단가 지속 인상 추진**
 - * 최중증 장애인 매칭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활동지원 이수 교육 일부 추가 감면(현 8시간 감면) 등 검토
 -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단가 및 대상 지속 확대
 - 보전급여 등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이용 현황 모니터링** 및 연구용역을 통해 **고령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 검토
 - * 65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는 7,484명, 이 중 보전급여 이용자는 727명('22.8)
 - * 장기요양 급여전환 및 보전급여 신청 안내 절차 강화하여 보전급여 이용자를 적극 발굴하여 제도 체계 내에서 사각지대 해소 추진('23)
- 서비스 다양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도록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 활동지원 수급자, 1인·고령 장애인 가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확대('23)
 -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24시간 활동지원**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23)
 - 활동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수급자의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23)
 - * 시범사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기관 연계 확대 운영방안 마련('24)
 - 취약가구·시간·대상·지역 등을 고려한 AI, 이건순회 방문 등 신규서비스 개발 및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24)
 - 도서지역·감염병 사유 외 취약가구(독거, 다장애가구), 시간(심야), 대상(희귀질환 등)을 고려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 확대방안 검토
 - * 코로나19로 한시 허용 중인 발달장애인 대상 가족 급여('22.8월 440명) 모니터링 병행
 - **활동지원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 등 도입 추진('25)
 -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자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결과, 서비스 현황 등 제공

집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 수요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자 활동지원 급여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계획(안) 〉

'22 기초모델 '23 모의적용 '24 시범사업 '24~'25 입법추진 '25~'26 본사업

- '22년 마련한 **개인예산제 기초모델** 바탕으로 **사업모델 보완** 및 **모의적용 연구·평가**('23)을 거쳐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24~'25)
- 개인예산제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24~25), 업무지원 시스템 기획(BPR/ISP)·구축 ('25~26) 거쳐 전국 확산 추진('26)
 - * 시군구 확대(안): ('23) 4개(모의적용) → ('24) 8개 → ('25) 17개 → ('26) 전국 확산
- 연차별 모니터링 및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모델을 지속 보완, 개인예산제 급여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고도화 연구 추진('26)
-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일부 급여 내에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별 모의적용 추진
 - **(모델 1: 급여 유연화)**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를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을 위한 **공공·민간서비스^{*} 구매 및 활용**
 - * (예)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의료비, 보조기기 등
 - 바우처사업 간 연계 방식으로 지급하되, 시스템 구축 시까지('26) 한시적으로 사전 결제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급여 지원
 - * 사전 급여 수령 없이, 이용자가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출하고 사후 정산(영수증 증빙 등)을 거쳐 급여 지급
 - 이용 범위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공공·민간서비스로,모의적용 연구 및 시범사업을 거쳐 이용 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 **(모델2: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급여 중 **일부(20%)**를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필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선택 이용**
 - 이용자가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특수자격자^{*}, 정서적 교감이 있는 개인^{**}을 선택**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 * 간호(조무), 언어·물리치료, 보행지도, 촉수화 등 전문자격 및 활동지원사 자격 보유자
 - ** 장애인이 희망하는 활동지원사 자격을 보유한 지인 또는 친구(가족 제외)

〈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델별 비교 〉

구분	모델1(급여 유연화)	모델2(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급여	활동지원 급여 최대 10% 내에서 공공·민간서비스 구매 이용	활동지원 급여 최대 20% 내에서 필요서비스 이용 (제공인력 선택)					
지급방식	 급여 일정액(최대 10%)는 바우처사업간 연계 방식으로 지급 시스템 구축 시까지(~'26) 한시적으로 사전 결제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 나머지 급여(최소 90%)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 바우처로 지급 	•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바우처로 지급					
이용범위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공공·민간서비스 - 모의적용 연구,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 활동지원사 자격이 보유한 특수자격자 [*] 또는 지인 * 간호(조무), 언어·물리치료, 보행지도, 촉수화 등					
추진체계 (잠정안)	신청·접수(참여자-지자체)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국민연금공단 지원) → 개인별지원계획 합의 또는 (필요시)이의신청·조정(참여자-시군구) → 지원계획에 따라 급여 집행(참여자) → 정산(국민연금공단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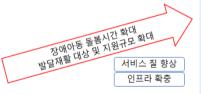
○ 장애계 단체, 학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추진('23~)

집 장애이동 복지 지원체계 고도화

• 장애아동돌봄서비스('09~)

현 재

- 발달재활서비스('09~)
- 부모·가족지원('13~)



2023~2027년

장애아동의 신체·정신적 역량강화 및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 * 발달재활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
- *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 *지역장애아동센터 신규 설치 추진
- (발달재활) 장애(위험군) 영유아 증가에 따라 언어·미술·음악, 행동·놀이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지속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서비스 대기 수요 해소 및 장애미등록 아동의 지원연령 상향**(6세 미만 → 9세 미만, 법 개정 필요) 등 **서비스 지원 지속 확대 추진**('23. 7.9만 → '27. 10만명)
 - * '23년 지원 대상자 1만명 우선 확대('22년 6.9만명 → '23년 7.9만명) 및 장애미등록 아동의 지원 가능 연령 상향(6세 미만 → 9세 미만, 약 1.6만명) 검토
 - 가격 공시제 강화 등 서비스 단가 적정관리 추진('23), 제공기관 전체 품질평가 실시, 종사자 보수 교육 체계 마련('24) 등 서비스 질 관리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 품질관리 사례

- ① 공시된 가격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시 부당결제로 간주하여 부당이득 환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 ② 바우처가 아닌 전액 자부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영역과 동일한 프로 그램은 같은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권고
- ③ 바우처 소진 이후에도 지정된 단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시된 회차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토록 권고
 - (장애아동돌봄) 중증장애아동('22 8천명)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제공시간
 단계적 확대 추진('23. 960 → '27. 1,440시간/연)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장애 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 추진

1-2.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u></u> 현황

- 현 정부 출범 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
 -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개정('24.6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지원 시범사업**(광주, '22~'24) 및 **주간활동서비스 1인집중 서비스** 지원 중('21~)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수립·발표('22.11월)
 -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소득보장 및 일자리 강화, 자립생활 및 부모·가족 지원 강화

☑ 개선 필요시항

-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활동·방과후돌봄 서비스 대상 및 지원시간 지속 확대 필요
 - * 성인 발달장애인 규모(약 25만여명)에 비해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인원 부족(1만명), 점심/송영, 주말/ 야간 등 지원 취약시간 존재
- 장애 정도가 극히 심한(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통합적 서비스와 지원체계가 부재
 - * 최중증 발달장애인 3명 중 1명 이상이 평일 낮 시간에 집에서 혼자 있거나, 부모·가족과 지냄('21.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대상 지원 서비스 부족, 조기 노화 발달장애인 대상 낮 활동 지원 확대 필요
 - *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에 따른 급여량 감소, 서비스 부재 등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

- (추진 방향)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 고려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24시간 지원체계 구축('24.6)
- (선정기준) 최중증 정의 마련 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 정도, 거주환경, 여건 등을 고려한 조사 추진
-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선정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분석하여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계획(안) 〉

구분	지원범위	장애정도·욕구·환경 분석	제공서비스		
	241171 7191	지역사회 참여 가능	최중증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야간	24시간 지원	지역사회 참여 불가	재가지원서비스 제공		
	24시간 보완	취약시간 대응	응급안전서비스, 긴급전화 등		
		주간활동서비스 참여 가능	1인 집중서비스 제공		
주간	낮활동 지원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복지관 모델 1인 집중서비스 제공		
		지자체 가용자원 활용	최중증 주간보호시설		
	치료지원	정기적 의료지원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공통	고도되어	동료상담, 자조모임	부모상담, 교육		
	가족지원	실태조사	생활실태 전수조사		

〈 최중증 발달장애인 야간 지원 〉

- (최중증 24시간 돌봄지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광주광역시, '22~) 전국 확대 추진
 - * (낮 시간) 1:1 주간활동 지원, (야간 시간) 공동생활 주택 지원 등
- (재가지원서비스) 와상, 사지마비 등 중증장애로 지역사회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추진
 - * 지자체 추가 지원을 통한 24시간 활동지원 이용자 760명 중 발달장애인은 29명(3.8%, '21.12월 기준)
- (심야시간 보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콜센터, 긴급돌봄 등 취약시간 돌봄 강화를 위한 보완적 돌봄 서비스 개발 추진(^23)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지원 〉

- (낮 활동 1인 집중)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중증 1인 집중서비스 확대 추진(단가 상향 지원)
- (최중증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비('23. 24억원)를 지원하는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우선 입소 지원
- (최중증 복지관) 농어촌 또는 주간활동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복지관 지원을 통해 최중증 일대일 낮 활동 지원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치료지원 〉

- (거점병원) 정기적 치료를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전국 확충 추진('25. 목표) 및 권역별 설치 후 지역단위 설치방안 마련
- (치료비 지원) 부모 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의료기관 내 발달장애 진료비 현황 분석 등 이용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
 - * 치료 프로그램 내용, 인력 현황, 업무범위 등 발달장애 치료현황 등 실태조사
 - ** (예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재활사업 참여 확대 등

〈 최중증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

- (심리·정서 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대상 부모상담, 교육 지원 강화
-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기구 발굴·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모델 개발('22~'23), 지자체 시행 지원('24~)
 -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예산(안) : ('22) 5억원 → ('23) 10억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

- (재산관리)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 (~'23. 120명)을 거쳐 본사업 실시('24)
- (공공후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확대('23. 1,563명) 및 법률지원 등 권익 옹호 기능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강화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지원인력 및 인프라 확충
 - 연구('23)를 통해 시군구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추가 확충**, **직접서비스 제공**, **인력·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 확충방안 마련

□ 발달장애인 낮 활동서비스 고도화

-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여가, 자조활동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지속 확대 추진('23. 2만 → '27. 3.2만명)
 - 단축형을 폐지하고, 기본형(월 132시간)·확장형(월 176시간)으로 개편하여 **일 8시간 이용 보장** (확장형) 등 **낮 활동 이용시간 확대**('23)
 - 기본형은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폐지**하고 확장형(일 8시간)은 **급여 차감을 지속 축소** 및 **차감제도 개편 모니터링 추진**('24)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 개편('23) 〉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22	주간활동	월 85시간(일 4시간)	월 125시간(일 5.5시간)	월 165시간(일 7.5시간)		
22	2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 -		△22시간	△56시간		
			‡			
'00	주간활동	월 132시	간(일 6시간)	월 176시간(일 8시간)		
'23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		△22시간			

-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규모 지속 확대** 및 **서비스 이용시간 추가 확대^{*} 추진**
 - * 주간활동 : 점심시간 포함, 하루 9시간 제공 / 방과후활동 : 하루 4시간 제공
- 낮 활동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정도·연령·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다각화 등 낮 활동 서비스 고도화 추진
 - 발달장애인 **낮 활동 제공기관 확충방안 연구**('23), **제공기관 기능보강 강화 방안** 연구('24) 등 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방과후 1인 집중지원 서비스 도입,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등 통해 방과후 활동 서비스 활성화('24)
 - 연령·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층·농어촌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방과후서비스 모델 연구('23) 및 지원체계 마련 추진('24)

○ 표준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내실화하고, 최중증장애인 전담 주간보호 시설 도입·확대 추진('24)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부모·기족의 양육 역량강화 및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해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지원
 대상 지속 확대('23. 3만 → '27. 5만명)
 -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 등 부모교육 강화**,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및 **테마·자율여행**, **힐림캠프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일시돌봄체계 마련('23)
 - 입소 전·후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패턴 유지**를 위해 **긴급돌봄센터 설치** 및 **시범사업**('23~'24, 전국 40여개소), **평가** 후 **본사업 확대 추진**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이용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이용기간이용료	• (이용기간) 1회 입소 시 1~7일(연 최대 30일) • (이용료) 1일 이용료 15천원, 식비 15천원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제공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
제공인력	센터장 1명, 돌봄인력 10명 총 11명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 기준
수행기관 이용정원	남·여 UNIT 각 4명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는 2개 UNIT
수행기관 유형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1-3.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단계적 자립 지원을 위한 로드맵 수립**('21.8.) 및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22~'24) 추진 중
 - 시범사업 추진 및 자립장애인 모니터링, 장애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사회 자립지원** 모형 수립 예정
 -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화·전문화** 등 개편 추진
-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장애인 우선공급 등 주거 지원
 - * 장애인 우선공급제도: 국민임대주택(20%이내), 통합공공임대주택(선순위공급 5%), 영구임대주택(1·2순위),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1·2순위) 등
- 농어촌 거주중인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가·임차주택 내 안전장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중('05~)
 - * 농어촌 주택지원 실적: ('17) 800건(15억) → ('19) 907건(17억) → ('21) 921건(17억원)

☑ 개선필요시항

-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전환을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과정, 지원서비스 연계 등 지원모형 개발·검증 필요
 -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의 평균 입소기간은 18.9년(21. 거주시설 실태조사)
 - **시설장애인의 자립신청 과정**에서 **본인의사 확인 효과성**에 대한 이의제기 등 사업 추진 관련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 수렴 필요**
- 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권 보장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약자용 주택'** 등 **공급 지원** 필요

집 장애인 지립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시범사업) 자립 희망 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 통해 자립 지원모형 개발하고 자문단 운영('22~) 통해 장애계 의견수렴 추진
 - * (시범사업) '22년 1년차 도입기→ '23년 2년차 추진기 → '24년 3년차 본사업 준비기
 - (모형개발) 자립 희망 장애인을 발굴 및 상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여 서비스 연계·제공하는 자립 지원모형 개발 추진('23)
 - * 시범사업 참여자 수(누적): ('22) 200명 → ('23) 400명 → ('25~) 본사업 시행
 - (서비스 지원) 생계·주거급여, 일상생활^{*} 지원, 주거지원,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일자리 연계, 건강주치의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
 - * 자립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추가 지원 : ('22) 월 60시간 → ('23) 월 80시간
 - (의견수렴) 장애인 당사자, 부모, 학계,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22~')을 통해 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 (전달체계 강화) 중앙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지역통합지원센터 단계적 확충을 통해 자립 희망 장애인 발굴 및 상담, 지원 활성화
 - * 한국장애인개발원 내 중앙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중('21~)
- (로드맵 보완) 시범사업(~'24) 후 평가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통해 지립 지원 로드맵 보완 및 예비타 당성조사를 거쳐 본사업 추진
- (법령 마련 지원)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법안논의 지속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화 및 전국 확대 추진
 - * (관련 법안 발의 현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2.1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0.12) 등

집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

- (거주시설 전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
 - **(의료전문화)** 중증 와상장애, 의료연계 및 집중 행동교정 등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추진
 - 의료집중형 전문기관 모델개발 및 운영기준 마련 등 위한 정책 연구('23) 및 시범사업 추진 검토

- (소규모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운영기준 마련('23) 및 시범운영 추진
- (주간보호시설 활성화) 시설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담 주간보호시설 도입 추진
 - 주간보호시설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델 연구**('23), **시설 신축** ('23. 1개소) 및 **기능보강 지원**
- (그룹홈 개선) 단기·공동생활가정 운영기준 정비를 통해 장기 거주행태 개선 및 단기·일시보호 서비스 수요 충족^{*} 지원
 - * 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사유 발생 시 단기적인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집 장애인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 장애인구 비율(5%, 통계청)을 고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일정비율(수도권 8%, 비수도권 5% 이상) 의무공급 지속 지원

집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도시지역 확대

- **장애인의 주거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장애인**에서 **도시지역**(수도권 포함)으로 **확대^{*} 추진**('23)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시 거주 장애인의 주택(자가·임차) 개조 지원
- (사업내용)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상태 및 장애등급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냉·난방 시설 등) 설치도 가능
- (사업물량) '23년 1,500호(농어촌 1,000호 + 도시 500호) → '27년 1,600호

1-4.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등 장애인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활동지원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도 지속 확대 추세
 - * 최근 5년간('17~'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57.1% 증가(63천 → 99천명)
- '19.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등 개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 의학적 장애등급 대신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수급 자격 및 급여량 결정
 - 장애등록제 도입 시('88년) 5개에 불과하던 **장애 유형 지속 확대**('00, '03), **새로운 장애 유형을 반영**하여 **인정기준 확대***('21.4)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투렛장애, 강박증 등

□ 개선 필요사항

- 복지서비스 규모는 지속 확대되었으나 서비스 품질은 장애인의 욕구 대비 다소 미흡하여, 서비스 질 제고 추진 필요
 -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 필요 서비스로 요양 및 가정 내 케어, 의료 및 재활치료, 가사지원 집중형, 이동 중심 서비스 등이 제시됨
 - 서비스 제공인력 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내실화 등 서비스 고도화 필요
- 현행 종합조사표가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장애계·국회 등 문제제기에 따라, 종합조사표 개선 검토 필요
-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현행 장애 인정 기준으로는 구체적 장애 상태 및 개별 장애 특성을 고려하는 데에 한계
 - * 희귀난치 질환 등 현행 의학적 기준 적용이 어려운 장애에 대한 장애인정 기준 개선 및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 확대 필요

☑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평가체계 구축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양성·교육과정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
 - 현장의 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3)
 - 인권·권익 보호 제도, 휴식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24)
 -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보수 교육과정 개편('25)
-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체계 개선 추진
 - **평가지표 개선 연구**('23)를 거쳐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및 체계를 개선**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 추진**('24)
 - 제공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해외연수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및 **패널티 부여** 등 **평가 개선방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25)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에 평가체계 도입하여 3년 주기로 서비스 평가 실시('24)
 - **종사자 보수교육**을 **제도화**('25)하고 **교육과정·시간을 지속 강화**하여,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품질 제고
 - * 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한 시범 운영을 거쳐 종사자 보수교육 단계적 도입 추진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종합조사표 개발

-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지표 개발 연구('23)
 - 모든 서비스에 대해 급여량 산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욕구 지표 신규 개발 및 지표별 타당성 검증
 - 기능제약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관한 지표를 확대·강화**하여 서비스 목적에 따른 **맞춤형 지표 활용 기반** 마련

- 제2기 고시개정전문위원회 구성·운영('23)
 - 장애계·학계·관계부처 참여하는 **제2기 고시개정전문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연구 결과 바탕으로 마련한 **고시개정안^{*} 심의·확정**(*23)
 -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 개정된 종합조사 지표에 대한 정확한 욕구 측정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평가매뉴얼 개발 및** 조사원 교육('24)

▷ 장애인정기준 개선 및 예외적 절차 확대

- 현행 장애 인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등 장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정사례 발굴** 및 기준 개선방안 연구('24)
- 개정 장애인정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제도화 추진('25)
 - 장애계·의학계·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4)을 통해 **장애인정** 기준 개정(안) 검토·마련
 - 공청회, 간담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정도판정기준**」등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25)

2. 건강 분야

2-1.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보건의료·건강사업의 유기적인 제공 및 연계를 위해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전달체계 단계적 마련
 - * 중앙센터(국립재활원) 지역센터(전국 시·도 17개소) 보건소
-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재활치료 제공 확대**를 위해 **권역재활병원***('05~),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 건립·지정 추진('18~)
 - * 경인·호남·충청·강원·영남·제주·경북 등 7개 설립·운영 중
 - ** 충남·경남권 병원 2개소, 전북·충북·경북·전남권 센터 8개소 건립 추진 중 / 수도권 병원 2개소, 제주권 센터 1개소 지정·운영 중('21~)
 - 지역사회 내 어린이재활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우수 의료기관을 **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수가 시범사업 운영 중('20.10~'23.12, 15개소)
- 증가하는 **회복기 재활수요 대응** 및 **조기 사회복귀 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17~20)을 거쳐 **재활** 의료기관 지정·운영제도 시행('20~, 45개소)

☑ 개선 필요시항

-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맞춤형 제공을 위한 중앙센터-지역센터 -보건소CBR 간 지역사회 연계 및 유기적 협력 활성화 필요
- 기능회복·유지, 재활치료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간 기능 정립 필요하고, 방문재활 등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연계 미흡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퇴원 이후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 미흡**, 재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방문재활** 의료서비스 도입 필요
- 재활치료 이후 지역사회 복귀 후 생활체육 사이의 **사각지대 존재**, 재활 연속성 확보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화 기반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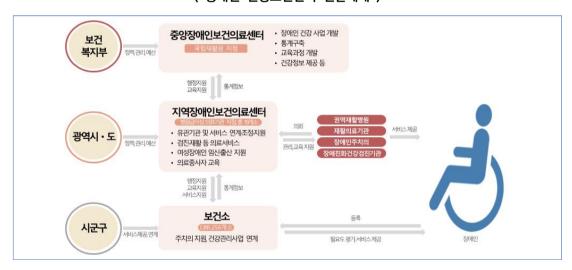
집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체계적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해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5개년 종합계획 마련
 - * (주요 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목표·방향,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에 따른 건강보건관리,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등

□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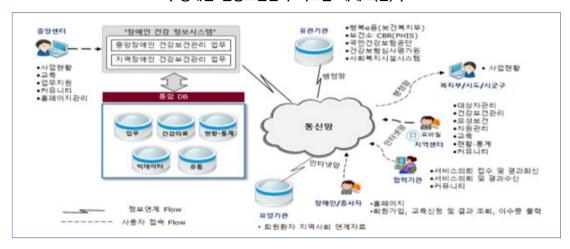
○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제공·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확대 추진('22. 17 → '27. 19개소)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



- 장애인 통합건강보건시례관리 제공을 위해 보건소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주체** 및 **지역사회** 복지^{*}·보건의료** 자원 연계 강화
 - *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 장애인 건강주치의, 재활의료기관, 권역재활병원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 통합 사례관리·업무지원 및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빅데이터 기반 확보를 위한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중앙·지역센터-지자체-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플랫폼 구축**, 대상자 등록·연계·종사자 교육 관리·홍보 등 **대국민 포털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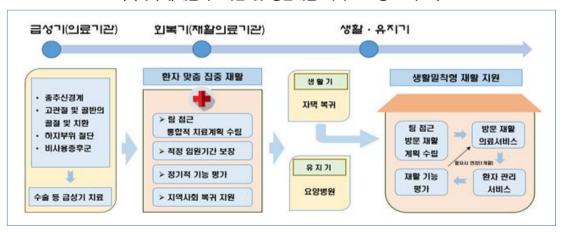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스템 체계도(안) 〉



집 장애인 재활의료 전달체계 고도화

-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급성기 의료기관과 재활의료기관의 연계 강화 및 보상체계 구축, 대상기관·환자군 단계적 확대^{**}
 - * 급성기(상종·종합병원)-회복기(재활의료기관(병원))-유지기(요양병원·의원) 및 지역사회
 - ** 급성기 의료기관에 종합병원 추가, 기존 심뇌혈관군에 근골격계질환군까지 확대 등
 - 회복기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재활치료**가 포함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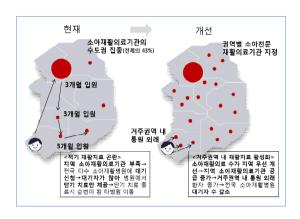
〈 (회복기)재활의료기관 및 방문재활 서비스 모형 모식도 〉



○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의료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건립 추진 중인 **권역재활병원 단계적 개원** 추진('23. 7개소 → 9개소)

이린이 재활의료 기반 구축

-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단계적 개원('23. 3개소 → 13개소)에 따른 수가 등 지원
 및 매뉴얼 개발 등 운영 내실화
- 지역사회 어린이재활의료 공급 확대를 위해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전국 확대·수가 개선 및** 공공재활병원과 연계 등 고도화 추진



□ 재활운동 및 체육 기반 마련

○ 재활치료(의료행위)와 생활체육(체육활동)의 중간영역인 **재활운동 및 체육 기반 마련 및 제도화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4~)

〈 재활치료-재활운동 및 체육-생활체육 간 구분(안) 〉

구 분	재활치료	재활운동 및 체육(가칭)	생활체육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대 상	의료법상 환자	장애인건강권법 대상자	국민체육진흥법 대상자			
법 령	의료법	장애인건강권법	국민체육진흥법			
		재활치료 종료 후 장애상태, 기능				
모저	의료 및 치료적	손상정도 등을 고려한 운동역량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운동기능			
목 적	처치를 통한 원상회복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향상으로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사회복귀를 지원				
레고니서	ا⊏ حار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제공시설	의료기관	공공체육시설	장애인전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이력	의사, 간호사, 치료사	フレネト 'ストハルハトエルット・ク テ・ル'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인 력	등	가칭 '장애인재활운동사'	건강운동관리사			
III Q	이글 뒤글	의료적 잔존기능 회복 및	휠체어 농구, 탁구 등			
내 용	의료 치료	신체적·심리적 재활 운동	종목별 운동			

○ 전문지도사 교육 및 양성 시범사업 시행 및 자격제도 도입 추진, 전문인력 양성 통한 **재활운동 및** 체육 공급 확대

2-2.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u></u> 현황

- 장애인의 건강관리 수요* 대응 및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추진 및 단계적 시범사업 시행**('18.5~)
 - * 전체 국민 대비 높은 미충족 의료율(전체국민 6.6% 〈 장애인 32.4%), 만성질환 유병률(고혈압 32.9% 〈 57.8%, 당뇨 14.5% 〈 28.6%)
- ** 주장애 관리 유형 확대(지체·뇌병변·시각 → +지적·정신·자폐) 및 수가 인상, 치과분야 신설('20.6~) 등
- 장애인의 건강관리, 질병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친화 검진기관**(22개소) 및 **산부인과**(10개소) **사업** 본격 개시('23.~)
 - 또한 치과병원·종합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09~, 15개소)
-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자립생활·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개선 필요사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및 주치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별 편차 또한 심함
 - * '22.11월 기준 등록 주치의는 724명(참여 가능 의사 약 3만명), 이용 신청 장애인은 3,226명(등록 중증 장애인 98만명)
- 기술발전,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보조기기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으나, 사업의 분절적 운영 등 수요자 욕구 반영 한계

□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선방안** 마련하여 **참여** 활성화 및 본사업 전환('25) 추진
 - 복지시설,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주치의 제도 특성에 맞는 **대안적 지불모형 마련** 등 검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선방안(예시)

- (종별제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경우 주장애관리서비스 종별제한을 완화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전달체계 내실화
- (비용부담) 초기 비용인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비용을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 등에 분산(수가 인상, 요건 완화 등)하여 사업 초기 진입비용 완화
- (지불모형) 환자단위 묶음지불제도 방식 적용 위해서는 환자군별 구체적인 서비스 목록*이 필요하므로, 후속 연구** 진행하여 묶음지불제도 도입 기반 마련
 - * (예시) 일반관리의 경우 초기 평가시 혈액검사 등 검진과 진단, 이후 월 또는 분기별 단위로 방문을 통한 맞춤형 약처방과 약물통합관리, 간호처치 등
 - ** 장애유형별 청구 주상병과 주요 서비스 이용 내역 분석 등
- (방문재활) 주치의 방문서비스 강화 위해 방문재활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방문재활서비스 신규 도입 추진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적용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도록 **법안 논의 지원** 및 **방안 마련**('23) 추진
 - *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대상자 확대, 중증 → 전체) 국회 심사 중('23.2, 상임위 의결)

☑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 건강검진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개선,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22. 22 → '27. 100개소)
 -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법)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 추진('26. 86개소↑)
 - *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지정) 국회 심사 중('23.2. 상임위 의결)
 -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저조 원인**, **의료기관 사업참여 저해 요인을 조사·분석** 및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제공기관 다양화 등 개선방안 검토

- 장애인 구강보건 접근성 향상 및 치과진료 불평등 완화를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확대
 ('22. 14 → '27. 17개소)
 -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편의성 제고** 및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 지정사업 신규 추진
-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및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연차별 확대 추진('22. 10 → '27. 15개소)
 - 장애에 따른 **산부인과적 중증도**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연구 추진

집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기술발전 및 사회변화에 따른 **욕구 다변화**, **의료적 필요성 증가** 등 이용자 요구 증가를 반영해 **보조** 기기 지원 확대 추진
 - **보조기기 품목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품목**을 **지속 확대**('23. 38 → '27. 46개)하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전동휠체어·스쿠터 등)
-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확충 및 역할·서비스 역량 강화
 - 중앙보조기기센터(국립재활원) 총괄 기능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사례관리 기능 강화^{*}, 평가를 통한 지역별 특성화 지원 추진
 - * (중앙) 정책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교육, 품질관리, 지역센터 운영 및 평가 등 (지역) 사례관리 일반, 특성화사업, 대여 및 수리 등
 - 대여·수리, 사례관리 등 **보조기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보조기기센터 분소**(分所) **설치 추진**하고 **스마트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확대**
- 보조기기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 구축 및 범부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 (참여대상)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보조기기 관련 업무 소관 부처

2-3.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인,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증가로 **의료·복지 등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적·물적** 자원은 수요대비 부족
 - * 장애인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1%이나 의료비는 국민전체 의료비의 17% 차지,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비장애인의 4.1배('19)
- ** 장애인·노인 인구는 1,057.6만명에 달하나 돌봄 인력은 48만명으로 매우 부족('19)
-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AIP(Aging in Place) 등 트렌드 변화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 가속화
- 장애인·노인의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한 **보조기기, 돌봄로봇** 등 개발 및 실증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실증
 - *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R&D ('20~'23년, 334억원) /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실증 R&D ('19~'22년, 93억원)

□ 개선 필요시항

- 장애인의 질병·이차장애의 예방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 및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신의료기술, 보조 기기 등 기술개발(R&D) 활성화 중요
 - 특히, **보조기기 국산화, 기술혁신 기반 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국내 복지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장애인 관련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제 수요 반영 및 실증환경 적용, 상용화 연계는 아직 미흡
 - 성과물을 통해 재활·자립·돌봄시스템의 실질적 개선 등 수요자 체감형 지원 강화 필요

□ 장애인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연구개발(R&D)

- 건강회복 및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등 장애인 최적화기술 연구개발 (R&D) 추진('23년 예타 추진 검토)
 - **리빙랩**을 활용한 개발성과물 **현장 적용 및 보급·확산 모색**
- 장애인·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체기능 보조·재활분야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실용화 R&D 추진
 - * 2차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24~'28년 총 5년간 약 451억원 투자 추진
 - 현장 문제해결, 선진기술과의 경쟁우위 확보, 첨단기술 적용에 중점을 둔 전략품목 보조기기 제품· 서비스 연구개발 추진



- 장애인, 노인의 **일상생활 내 수요는 존재하나 산업화가 어려운 보조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 대응 연구개발 추진**

1차 사업 정책품목 보조기기 대표 성과물 예시



한 손 사용자용 도마



손과 발을 이용한 안전 손톱깎이



전동휠체어 후방카메라



전기 플러그 보조기기

- 지속적인 공공·산업수요 발굴 및 전략·정책품목 연구개발 연계 강화, 성과확산 등 위해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 플랫폼 운영

- 장애인 돌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돌봄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기반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R&D) 추진^{*}
 - * 사업기간: '23년~'27년(총 5년) / 투자 규모 : 약 250억원 투자 추진
 - 기존 연구를 통해 旣 개발된 돌봄로봇(4종) 후속연구 및 기술 고도화, 신규 5종 돌봄로봇 기술개발 및 중개연구 추진
 - * (기존 4종) 이승보조, 욕창예방, 식사보조, 배설보조 (신규 5종) 이동보조, 목욕보조, 유연착용형 근력보조,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등

〈 기존 4종 돌봄로봇 〉



- **사용성 평가, 표준화** 및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 데이터 연구**를 통해 다양한 **돌봄로봇 서비스 모델** 개발·실증 추진
- **돌봄로봇 실증플랫폼**('스마트돌봄스페이스')* 통해 **이용자**(장애인, 돌봄 제공인력) **체험·평가의견 환류** 및 가정. 요양시설 등에 보급 확산
 - * 최중증 장애인과 돌봄제공인력의 생활을 고려하여 사물인터넷 및 돌봄로봇 기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스마트돌봄스페이스 3개소 구축('19~'21, 국립재활원)

□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장애인 건강관리 생태계 조성 연구(R&D)

- 디지털 헬스기기·기술을 활용한 장애인-보건의료전문가-돌봄제공자 다자간 비대면 건강관리 체계 모델 연구 추진
 -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17~, 473개 의료기관 참여·누적 협진 23만여 건)과 연계방안 마련 검토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 활용하여 장애유형별 미충족의료, 건강위험 요인, 취약계층 등 발굴 및 사전 대응·지원방안 연구 추진
 - *「장애인건강권법」제12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건보공단, 통계청 정보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행태, 다빈도·동반 질환, 의료이용, 사망원인 등 데이터 구축
- **장애유형별 건강교육 수요** 파악, **장애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을 고려한 디지털 교육플랫폼 구축 추진

3. 보육·교육 분야

3-1.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해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 및 보조교사, 장애아반 담당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중
 -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3) 172개소 → ('18) 177개소 → ('22) 177개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13) 867개소 → ('18) 1,000개소 → ('22) 1,393개소
- ** (장애아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0(1,602명), '21(1,951명), '22.6월(2,171명)
- 매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통해 **장애이전문어린이집을 신축**(2개소)하고, 장애아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비 지원
- 영유아의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중
 -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10년) → 차상위 확대('11년) → 건보하위 30%('13년) → 건보하위 50%('19년) → 건보하위 70%('22년) → 건보하위 80%('23년)

집 개선 필요사항

-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 제고 및 장애아보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신청률 제고를 위해 신청률 저조 원인분석 및 사업 활성화 요구
-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 제고** 및 **특수교육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마련 필요

집 장애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 장애영유아 돌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확충과 연계하여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연차별 확대 추진
 -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수(누적) : ('23) 1,650 → ('27) 1,970개소
- 장애영유아의 전문적 돌봄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등 **보육교사 인력 지원 확대** 및 인건비·수당 등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수검 활성화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영유아검진 발달평가결과(K-DST)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자 전체로 발달 정밀검사 지원대상 확대 추진
 - * 지원기준: ('23) 건강보험 소득 80% → 소득기준 삭제(100%)
- 보호자의 심리적 저항감 완화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장애" 표현을 삭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사업명칭 변경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 확인서 발급 등의 **추가 절차 없이** 공단 안내문을 이용하여 **발달정밀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개편 추진**

☑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관계부처 연계를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14일~71개월), **장애 진단·등록** 시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추진
 - * ▲ 표준모자보건수첩 안내 ▲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안내 ▲ 발달재활서비스 안내와 연계 ▲ 장애 진단 및 등록 시 정보전달 ▲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속 홍보 등
 -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마다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전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 홍보**
 - '온맘 사이트' 내 장애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자료개발·보급 확대 추진
 -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www.nise.go.kr/onmam)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무상·의무교육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영아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및 통합유치원 확대 추진
 - * 유치원에 설치된 특수학급 수(누적) : ('23) 1.517개 → ('27) 1.837개

3-2.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 증가**
 - * ('18) 71.0% → ('22) 72.8% (특수학급 55.9%, 일반학급 16.9%)

〈 특수교육 인프라 현황('18~'22) 〉

구 분		'18	'19	'20	'21	'22
특수학교		25,919	26,084 26,299 27,02		27,027	27,979
특수교육지원센터		418	375	316	261	254
일반학교	특수학급	48,848	50,812	52,744	54,266	57,948
	일반학급	15,595	15,687	16,061	16,600	17,514
총계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 장애인의 **취업률**. **진학률은 증가**. **비진학·미취업자는 감소** 추세

〈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및 취업 현황 〉

		고등학교						전공과				
연도 졸업자	(내학/선		취	업	비진학 미취업자	이수자	진학		취업		비진학 미취업자	
		인원	진학률	인원	취업률	· · · · · · 수 수	인원	진학률	인원	취업률	수	
2018	7,811	3,668	47.0	1,006	24.3	3,137	2,252	20	0.9	970	43.5	1,262
2019	7,727	3,812	49.3	851	21.7	3,064	2,234	23	1.0	1,004	45.4	1,207
2020	7,339	3,735	50.9	845	23.4	2,759	2,360	20	0.8	1,004	42.9	1,336
2021	6,827	3,720	54.5	732	23.6	2,375	2,481	31	1.2	1,094	44.7	1,356
2022	6,762	3,800	56.2	671	22.7	2,291	2,616	31	1.2	1,172	45.3	1,413

[※] 진학률 = 진학자(고등학교·전공과)/졸업자(전공과 이수자 포함), 취업률 = 취업자(고등학교·전공과)/ (졸업자-진학자)

☑ 개선 필요사항

-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에서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교원 역량 제고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필요**
- 졸업 후 취업 직종이 제조업, 청소·세탁 등 **단순 노무 직종에 치중**되어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직종 다양성 부족^{*} 해소 필요**
 - *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직종('22) : 제품 제조(19.7%), 식음료 서비스(16.8%), 청소·세탁(15.2%)

□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일반교사-특수교사 간 협력적 역할 모형 발굴을 위해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 추진('23. 120 →
 '27. 200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확대와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확대 추진
 - '정다운학교' 대상으로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 적용**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검사 체계** 구축 추진('23)
 - 학교장애인식지수 영역별 연계 프로그램 및 활용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초·중·고 통합학급 적용 추진('24~)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졸업 이후 지역기반 교육 기회 확대 등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수 : ('23) 1개 기관 → ('27) 10개 기관
 -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초·중·고 진로교육 연계**를 강화하여 진로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기존 **특수학교 전공과 중심**에서 **대학 연계 전공과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교육 기회 다양화
- 장애학생 일자리 확보 및 취업 유지 도모를 위해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추진
 -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이력관리를 위한 범부처 **장애** 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고도화

3-3.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 등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수는 지속 증가 추세
 * 연차별 장애대학(원)생 수 : ('18) 9.345 → ('20) 9.717 → ('22) 9.824명
-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법적기반 강화 및 확대 추진 ('22. 32개)
 - 「평생교육법」개정(*21.6.8.)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지원 근거 마련
 - * 지역사회 내 장애인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등 담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 발표 ('22.12)

□ 개선 필요사항

- 고등교육 기관 내 **장애학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장애대학(원)생 지원** 체계 미비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적·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고등** 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필요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체인구 대비 저조**하여, 장애인의 **역량개발 저하 및 사회참여** 저조 우려
 - ※ 평생교육 참여율: 장애인 0.9% vs 전체 성인 30.7%('20년 장애인실태조사, '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집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강화

-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및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확대^{**} 추진을 통해 고등교육 기회 확대
 - * 「특수교육법」 개정('22.10) → 하위법령 개정 및 센터 설치·지정 추진('23~)
- **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 수(누적) : ('23) 10교 → ('27) 15교
-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특성화 대학을 발굴하여 장애인 중심의 교육 기회 확대
 - * ('22) 대학별 운영 사례 조사 → ('23) 정책연구 → ('24~) 운영모델 확산
 - 장애학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집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이 시군구 단위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23. 53개 → *27. 100개), 지역별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조성 지원
- 장애인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23. 3,000명)
 - 장애인학습자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처를 발굴·확대**하여 학습자 수요에 맞는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확산**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장애유형별 온라인 콘텐츠* 접근성 확대**
 - * K-MOOC 등 공공기관 제공 콘텐츠에 수어·자막·화면해설 등 제공 확대
 - 장애 학습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과정 개발·보급을 통해 **연령대별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참여 촉진

4. 경제활동 분야

4-1.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1.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현황

- (소득보장)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중증 36.2만명) 및 장애 수당(경증 39.7만명) 지원('22)
- (직업훈련) 중증장애인 등 대상 직업재활지원 등 훈련지원(1.5만명), 직업재활시설(2만명, '21), 재정 일자리 사업(2.9만명, '22) 운영 중
- (우선구매)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연간 총 구매액의 1%) 시행 중('11~)
 -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768개소 지정, 지자체·공기업 등 1,037개 기관 참여 중('22)

□ 개선 필요사항

- (소득보장)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검토 필요
 -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을 위해 물가 인상(5.1%, '22) 등 고려하여 **장애수당 급여액 인상** 추진 필요
- (직업훈련) 15세이상 장애인 중 약 30.7만명(11%)이 비취업상태에서 근로를 희망함에 따라, 일자리·직업재활 확대 필요('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다양한 직무경험 제공** 및 발달장애인 등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 직무유형 지속** 개발 필요
-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과 구매기관 간 수요의 불일치, 목표 미달성 시 강제력 부족 등으로 '21년 우선구매율 1% 미달성(0.99%)
 -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생산시설 생산품 경쟁력 강화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한 공공 기관의 구매 촉진 필요
 - *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8) 1.07% → ('19) 1.14% → ('20) 1.12% → ('21) 0.99%

집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확대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원단가 지속 인상** 및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 지원
 - * '23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5.1% 인상(최대 급여액 387,500원→403,180원)
- 소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적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의 지급기준 개선 검토
 - * (현행 장애인연금 대상) 기존의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공제기준 개편(4급지, 재산공제액 상향) 등 반영하여 장애수당 재산공제기준 개편 적용
-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 및 장애 추가 비용 보전**에 필요한 **표준소득 기준 산출**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애(아동)수당 인상 검토**
 - * '20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5.3만원 수준 추정('20.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 장애인 일자리 사업 〉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소득보장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 단계적 확대('23 3만 → '27 4만명) 및 사업 고도화 추진
 -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유형 지속 개발·확대
 -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42개 직무유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제공 중
 - **안전한 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산재예방 교육** 강화 및 **교육교재 등 개발**· 보급 지원
- 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소득활동역량 평가와 장애인 고용서비스 연계 전달체계 마련
 - 소득활동종합조사를 통해 일자리 등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근로역량 평가 및 취업· 직업훈련 등 연계·지원
 - * 소득활동종합조사를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사업 추진('24~)



·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22)

-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활동종합조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직업재활·훈련 및 민간일자리 등 고용연계하는 시범사업
 -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근로욕구·역량 등이 높음 → 고용부, 낮음 → 복지부 사업 연계
- (참여자) 중증장애인 1.095명(발달 60%, 지체 14%, 정신 9.2%, 시각 5.6% 등)
- (의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발굴하여 취업 또는 훈련 연계로 소득창출 지원
 - 체계화된 평가도구로 정확한 사정(査定)을 통해 직업훈련·일자리연계 등 고용서비스에 대한 최초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등의 수행인력 처우개선 추진('23.
 가이드라인 85% → '27. 100% 수준)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 점진적 인상 추진
- 비진학·미취업 고등부 장애학생 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수요 적기 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 직업훈련 확대 추진('23. 1,200 → '27. 1,860명)
 - * 직업재활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중에서 33개소 선정)에 현장중심 직업 훈련 기능을 추가하여 훈련인원 확대('22. 1,200명) 추진



₹ 현장중심 직업훈련

- '현장중심 직업훈련(First Job)'은 전환기 장애청소년 및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 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사업체 현장에 훈련지원인(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직무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
 - 훈련장애인 **직업훈련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훈련수당 인상 검토**, 안정적 훈련 **사업체 확보**를 위한 **사업체 지원방안 마련 추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한 **장애인 1인당 직업훈련교사 배치 기준 개선**(현 10~12명당 1명) 및 **공통 훈련프로그램 마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현황 〉

역할 현황		배치기준	유사배치기준
장애인이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취업 훈련·진로지도 등 실시		•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이용장애인 10명당 1명 • 직업적응훈련시설 : 이용장애인 12명당 1명	• 특수학교·학급 특수교육원 : 4명당 1명 • 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 3명당 1명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신설·지원** 등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참여 활성화방안 마련 추진
 - * (장애인 참여수당 지원 유사사례 현황)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월 10만원, ▲ 직업능력개발운영사업 (장애인고용공단) 월 28.4만원, ▲ 경기도 기회수당 월 16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발전계획 〉

- 직업재활시설·사업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포괄하여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종합 발전계획 수립**('23)
 - 장애인직업재활과 일자리 관련 사업 **현황 분석** 및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장애계, 학계,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개선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병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지정·심사제도 개선 및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등 사후 관리·감독 강화 추진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70개소, 장애인복지단체 190개소,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16개소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총 768개소 지정·운영 중('22)



- 생산시설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품목 신규 발굴·다양화, 판로개척 및 경영 컨설팅 지원 확대 추진
 -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21) : 7,044억원 지정 생산시설에서 장애인 13,491명(중증 12,210명, 90.5%) 고용 창출

〈 공공기관 우선구매 방법 〉

〈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형 및 종류 〉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상향(우선 구매 목표 1% → 2%) 추진
 - * (유사 우선구매 제도)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0.8%
- 우선구매제도 목표 이행 독려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지표^{*} 개선 검토 추진
 - * (예시)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 지자체 합동평가(행정안전부) 등

4-2.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직업훈련 확대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u> 현황</u>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지원인**(인적) 및 **보조공학기기**(물적) 서비스 지원 중
 - * 근로지원인 지원 : ('19) 3천 → ('20) 5천 → ('21) 8천 → ('22) 10천명
 - ** 보조공학기기 지원: '22년 1.1만명에게 1인당 15백만원(중증 20백만원)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중증장애인 고용유지 인원 수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 은 지속 증가 추세
 -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표준사업장 신규 입사 후 60일 이상 근속한 경우

〈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연도말 중증장애인 고용유지인원 현황 〉

(단위: 개소, 명)

20	118	2019		2020		2021		2022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331	6,010	391	7,180	473	8,643	566	10,035	622	11,470

-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집단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3.7천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22.12월 기준)
- 4차산업(IoT, 통합플랫폼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 장애 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 직무 개발 수요 증가
 - * (사례) 최근 5년간 이커머스 쇼핑파트너, 게임 모니터링 요원 등 9개 IT 관련 직무 개발

` 개선 필요시항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지속 확대되었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맞춤형 지원요구 충족에는 다소 부족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증가**하고 있으나 **판로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대기업은 자회사 설립관련 제한** 으로 제도활용에 한계
- 4차산업 발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수요를 고려한 **장애인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확대 필요

□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고용의무이행 지원
 - 고용컨설팅 대상을 공공기관 중심에서 **고용저조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컨설팅 자기진단** 사이트^{*}를 구축하여 고용컨설팅과 연계
 - * (제공내용 예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 차별여부 진단, 고용부담금 모의계산 등
- 명단공표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업(관)의 의무이행 지원
 -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상향('24년 3.8%)에 대비하여 공공부문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기존 80%→ 100%, '23)하고, **이행지도 강화**
 - **명단공표 대상 기업 수 적정화**(現 300인 이상), **공표내용·방식 변경 등 제도개선** 통해 명단공표 실효성 제고
-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신규고용장려금을 통한 사업주 지원 확대
 - * '23년 월별지원단가 인상: (경증) 男 30 → 35만 / 女 45 → 50만원, (중증) 男 60 → 70만 / 女·중증 80 → 90만원
 - ** 고용장려금 지급 규모(연인원) : ('22) 584,360명 → ('23) 611,300명
- ***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이 장애인 신규고용 시 지원(3년 한시)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수 : ('23) 147개 → ('27) 181개 목표
 - 표준사업장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상향***
 - *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0.6% → 0.8%('23~)
 - 대기업 표준사업장 설립 확산을 위해 **컨소시엄형^{*} 참여 허용, 대기업의 자회사 설립관련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
 - *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이 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 ** (예: 의료법인) '18년까지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했으나 '19년부터 유권해석으로 자회사 설립이 제한, 4개 의료법인이 표준사업장 설립하려 했으나 무산

□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 제조·복지 분야에 집중^{*}된 **장애인 직무영역 확장**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기업 맞춤형 장애인** 고용모델 발굴^{**}
 - * 장애인 취업자 업종 비중 : 제조업(13.7%), 보건업(12.6%), 농·어업(12.6%)
 - ** (예) 쿠팡·장애인고용공단 협업, 이커머스 쇼핑파트너 직무 개발('20~'21년 238명 고용)
- 4차 산업형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전국 확산 및 수준별 IT 훈련과정 확대
 - *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 수(누적): ('23) 6개소 → ('27) 17개소 목표

집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 * 근로지원인 : ('22) 10,000명 → ('23) 10,500명 보조공학기기 : ('22) 13,000점 → ('23) 14,000점
 -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합 보조공학기기 추천***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선,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배치
 - * 맞춤형 기기지원 : ('22) 227점 → ('23) 460점
-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대상**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 근로자** 까지 확대(3,850명 → 15,440명)
 -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려하여 전국 지점이 많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전용** 카드 출시 및 카드사업자 확대 추진

4-3. 장애인 벤처·중소기업 지원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 희망 장애인에게 창업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창업 촉진 및 영업 지속률 제고 지원 중

〈 창업교육 지원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20	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1,553	974	1,530	974	1,553	974	1,530	674	1,151	674

○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장애인기업의 초기성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 창업보육실 운영 중('22년 기준, 전국 16개소 124개실 운영)

〈 창업보육실(BI)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고용 인원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20	18	2019		2020		2021		2022	
매출	고용	매출	고용	매출	고용	매출	고용	매출	고용
219	2.05	202	2.25	249	3.05	196	3.56	276	3.57

○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 중('06~)

□ 개선 필요사항

- 초기 창업단계 교육과 창업(사업화)자금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후속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유관 기관 협업·후속 연계사업 부족
- 코로나19 유행, 소비자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장애인기업 매출 급감**에 따라,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지원 확대 필요

□ 장애인 창업지원

- 성장단계별 창업컨설팅·교육 콘텐츠 다양화 및 후속 연계지원 강화
 - 장애인 맞춤형 창업역량 강화 컨설팅·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유관기관 협업·지원사업 간 연계를 통한 창업 사업화 지원 강화
 - * 장애유형별(청각 등), 성장단계별(창업→성장→재기) 교육 콘텐츠 확대
- 장애인 창업보육실 지원강화 및 특화사업장 구축 확대
 - **창업보육실 졸업기업**(보육기간 만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추진** 및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연도별 **신규 개소** 추진 확대
 - * 개소 일정 : 제주('23.6. 예정), 충남('23.7. 예정), 경남 진주시('23.8. 예정), 충남 아산시('23.11. 예정), 전북 익산시('24.12. 예정)

집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 기업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법·제도 개선
 - 법 개정^{*}을 통한 중증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추진
 - *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규정 마련(「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확산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및 공공기관 등의 제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 現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비율(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공사의 1%)

〈 연도별 장애인기업 신규발급 확인현황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공공구매실적(억원)	1,234,078	1,234,134	1,349,802	1,457,992	1,540,293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실적(억원) (구매비율, %)	15,406 (1.2%)	17,677 (1.4%)	20,952 (1.6%)	23,275 (1.6%)	24,390 (1.6%)
공공기관 수	788개	836개	837개	849개	849개

5. 체육·관광 분야

5-1.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지원 확대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거점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 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운영·건립 중
 - * 광역단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14개 시·도 운영 중, '22년까지 기초단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누적 총 77개소 건립 선정('22년 최초 4개소 준공·운영)
-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만 19~64세 장애인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월 9.5 만원) **지원 중**('22년 8,731명 지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도 지속 확대 중
 - * 가맹시설 수: ('19) 791개소 → ('20) 887개소 → ('21) 1,568개소 → ('22) 2,525개소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장애 유형·연령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중**('06년~)

□ 개선 필요사항

- **장애인 체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30.5%, 주 1회 이상)은 비장애인 대비(61.2%) 여전히 낮은 수준('22년)
- 가맹시설 지속 확충에도 불구하고,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가맹시설(15,355개소) 대비 현저히 부족한 상황(16.4%)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단가(월 9.5만원, '22.10~)도 **시설 평균 수강료보다 낮아,** 장애인 이용자의 **자부담 발생 우려**
 - * 이용자 지불 수강료 평균 12만원('21년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양적 성장**되었으나 **장애 유형·정도·연령에 특화된 프로그램 및 지도 매뉴얼**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

□ 사회통합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군·구 단위 생활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지속 확대 추진
 - * 건립 선정된 반다비 체육센터 수(누적): ('23) 91개소 → ('27) 150개소
 -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건립·운영 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운영 주체인 **지자체에 권고**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인체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관 연차별 확대 추진
 - *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관 수(누적): ('22) 3개소 → ('23) 6개소(목표)

집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 장애인 스포츠 수강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확대 및 지원금액 지속 상향 검토('22.9. 월 8.5만 → '22.10. 월 9.5만원)
 -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수(누적): ('22) 2,525개소 → ('27) 7,500개소(목표: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수의 50% 수준)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지속 확충

- 장애유형·정도별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 등 위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설치 확대 추진(23. 14개소 → 27. 26개소(누적))
 - 반다비 체육센터와 연계한 연차별 확대 운영 추진

○ 장애유형·정도·연령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운영 중인 생활체육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 유형·정도·연령에 특화된 프로그램 지도 매뉴얼 개발·보급 추진

5-2.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반 확충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지속** 추진 중('22년 누적 112개소)
 - * 관광지 내 경사로, 보행로, 장애인 주차장 및 화장실, 기타 이용·편의시설 개보수

〈 열린관광지 조성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20	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6	1,300	12	2,414	20	3,796	23	6,426	20	7,426	20	7,426

- 무장애 관광시장 육성을 위한 행복나눔 여행 개발, 플랫폼 구축*, 투어케어 인력** 양성('22년 180명 양성) 등 시장 조성 지원 중
 - * 무장애 이용·편의시설 설치 현황, 장애유형별 이동가능 여부, 교통정보 등 제공
 - ** 관광취약계층의 여행을 돕는 동행자, 무장애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전문가

□ 개선 필요사항

- 관광지 접근성 및 관광에 필수적인 지역 내 편의시설(이동·숙박·식음 등) 연계성,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등은 아직 미흡한 수준
 - * 전국 관광지 2,497개소 중 열린관광지는 4.5%(112개)에 불과
- 무장애 관광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장애인의 국내 여행 경험률은 65.7%, 연 1.8회(18년 기준)에 불과한 수준
 - 관광지 등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개선, 투어케어전문인력**(여행보조인력) **양성** 등 병행 추진 필요

집 장애인 관광 접근성 제고

- 관광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열린관광지 지속 확대 추진**
 - * 열린관광지 조성 수(누적) : ('23) 132개소 → ('27) 252개소
- 물리적 접근성 개선 외에도 관광취약계층 특화 관광콘텐츠 조성, 旣 조성 시설 모니터링 등 열린 관광지 관리·운영 내실화

□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 관광지 및 관광지와 연계한 편의시설의 연계망 개선을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신규 지정 및 전국 단위 확대 조성 추진
 - *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수(누적) : (~'23) 1개(강릉시) → ('27) 13개
 - 관광취약계층의 **주요 관광거점 간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전반적인 **무장애 관광교통 환경 개선** (버스·미니밴 도입 및 운영) 추진
- 무장애 관광도시 인프라를 중심으로 **무장애 통합서비스 제공 및 관광상품 활성화 추진**
 -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관광 안내** 및 관광활동에 필요한 활동 보조기기 보완 및 대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도시 내 관광자원, 편의시설 등을 연계한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

〈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슬 개념 〉



집 장애인 관광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 지속 지원** 및 **종사자 인식개선**, **무장애 관광** 전문여행사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행복나눔여행 지속 지원 추진**(매년 500명 규모)
 - 여행사 등 관광업 종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행 강화**
 - 연구용역 수행('23)을 거쳐 **무장애 관광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및 관광취약계층 **투어케어 전문 인력 양성** 추진
- 매년 **무장애 관광정보 신규 1,000건 발굴**하고, 장애유형별 체험콘텐츠 탑재 등 **무장애 관광플랫폼** 고도화 추진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 **무장애 관광**에 대한 **우호적 사회환경** 조성 추진

6. 문화예술 및 디지털·미디어

6-1.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접근성 문제**, **코로나19** 등으로 **문화** 예술 향유는 정체·하락
 - * 장애인 문화예술 관람률 : ('17) 6.4% → ('20) 2.0% 문화예술 참여율 : ('17) 3.5% → ('20) 3.0% ('17, '20.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 교육 및 향유 등 지원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 운영('07~)
-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등 여가 향유 지원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 누리카드)' 지원 중('06~)

☑ 개선 필요사항

- 그동안 문화시설 내 이동 편의 등 장애인 접근성은 제고했으나, 여전히 **시설 내 정보 접근, 편의** 제공 등은 미흡한 상황
 - * 문화시설 내 휠체어 이동 편의는 우수하나(82.8%), 정보 접근 지원(46.9%) 및 장애인 관람석·열람실·무대설치율(42.4%)은 다소 미흡('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향유 분야에서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아직도 높은 수준
 -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장애인 58.1%, 비장애인 80.2% /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율 : 장애인 65%, 비장애인 85.6%('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전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여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 문화시설 접근성 1차 실태조사('22) 바탕으로 **접근성 가이드북***(매뉴얼) **제작**('23) 및 **배포, 교육** ('24~'27) 추진
 - * (적용 대상) 전국 17개 시·도 공공·민간 문화기반시설
 - 1차 실태조사 대비 개선현황 등 **결과 비교분석**, **신규 과제 발굴** 등을 위한 **2차 문화시설 접근성 실태조사**('26) 추진
-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무장애 문화 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22. 9개
 → '23. 12개)

집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제도 마련 연구**('23)를 통해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안) 수립 추진
-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우선지역 시범운영을 거쳐 대상 지역 확대^{*} 및 전국단위 확대 운영 검토
 - * 지역 내 장애인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 고려한 지역 중심 확대 등
- 장애인 **시설 향유·체험 프로그램 개발**('23~'24) 및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추진
 -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장애예술 창작 아카데미' 등 사업을 통해 **장애인 시설 향유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 **농인**, 시각장애인의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 강화('23~)
 - 정부·공공기관·문화예술기관 **주요 발표 시 수어통역. 점자번역 지원 확대**
 - * 공공수어통역 지원 건수 : ('22) 연 440회 → ('27) 연 2,000회 목표
 - **문화정보**(영화, 박물관·미술관 전시 등)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추진
 - * 박물관·미술관 등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수(누적): ('23) 10 → ('27) 50개소

6-2.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한황

- 장애예술인의 83.7%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유형별로는 **발달·지체장애 비율이 높고** 시각, 청각·언어 장애도 상당수 포함^{*}
 - * 지적장애 34.3%, 지체장애 26%, 시각장애 15%, 자폐성장애 13%, 청각·언어장애 4.9% 등('21.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20.6)에 따라, '22.9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22~'26) 수립·발표
 - 장애예술인 창작활동·교육 및 문화예술 향유 지원은 지속 확대
 - * (관련 예산 지원) '13년 43억원 → '18년 120억원 → '22년 260억원
 -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복합문화시설 이음센터 건립**(15) 및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조성 추진** (23.8월 개관 예정)

□ 개선 필요사항

- 장애예술인 중 전업 비율은 62.2%이나 평균 개인소득은 809만원,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도 218 만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어려움 호소
 - 장애예술인을 위한 **연습·창작공간 및 활동 기회**는 **부족한 수준**
 - * 장애예술인의 창작·발표 시 주된 어려운 점은 ① 연습·창작공간 부족(55%), ② 시설 부족(48.7%) 등으로 나타남('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특화 인력이 부족하며, 장애인 대상 전문예술교육기관 등 문화예술 교육 기회도 부족한 상황
 - * 장애예술인 중 62%가 전문교육기관·시설 부족으로 전문교육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94.7%가 전문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정책 제도화

-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예술 공모사업 개선안 도출 및 사업 개편**하고,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지원** 추진
 - 「'22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연구」를 통해 **지원체계 개선방안 도출**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회를 위해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개관 및 표준전시장 조성**, **지역 장애예술 지원사업** 등 추진('23)
- **장애예술 공모사업 예산 확대 및 지속 개편**하고,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확대 및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24~'25)
- 공모사업 추진, 지역 거점 **장애예술인 표준공간 조성** 및 **레지던시 사업** 추진, 지역 대표 **장애예술** 단체 운영 지원 확대 등 검토
 - **광역별 장애예술인 표준공간 조성** 및 **거점단체 선별적 지원**, 지역 거점형 **장애예술인 단체 육성** 등 추진
 - 장애예술인 및 공모사업 증가에 맞추어 창작지원 규모 확보

○ 장애예술인·단체 창작물 유통지원 확대

-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개정('23.上)을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 도입** 및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공기관 구매 유도 촉진**
-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유통 플랫폼 구축·운영 추진
 - * 주요내용(안) : 기초환경 분석,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및 유통 활성화 방안, 유통 플랫폼 온·오프라인 사업 계획 등 마련

집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 매개자 양성 교육 체계 구축

- **장애인문화예술원 아카데미**를 활용한 **장애예술 심화교육 체계 마련** 및 **입문형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3~'24)
 - 장르·분야별 장애예술인 교육 및 아카데미 내 심화과정 개설 추진
 - **문화예술 전문교육기관**, **장애예술 공모사업 장애예술단체 연계** 등을 통해 **입문형 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 단계별 장애예술인 교육체계 구축 계획 수립 및 심화교육 실시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계별 장애예술인 교육체계 구축 계획 수립** 및 **지역 거점센터 연계**하여 **장애예술인 심화교육 실시**
 - 장애인문화예술원 아카데미 예술 장르별 심화교육* 추진
 - * 신기술·신매체 등을 활용한 예술교육 개발 및 표현 방식 확장 등 검토
- 장애예술인 매개인력 양성교육 체계 마련
 - 장애예술인 대상 **수요조사**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제도 내 장애예술 특화과정 개설** 여부 검토('23)
 - 유관기관, 예술단체 협력 매개자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심화교육 및 재교육과정 개설·운영 지원 추진
 - * 장애인문화예술원 아카데미 과정 및 유관기관 협력과정 개설 추진 등

6-3. ICT 기반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어 오고 있으나. 일반 국민 대비 정보격차 수준이 여전
 - *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 디지털 정보화 수준: ('17) 70.0% → ('19) 75.2% → ('21) 81.7%
-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고,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을 제공 중
 - ※ (EU) ICT 제품 및 서비스 제조업자, 서비스제공자, 유통업자 등에게 장애인 접근 보장 의무를 부과하는 「유럽접근성법」 제정('19) 및 관련 표준 제공(EN 301 549) (미국) 재활법 제508조(공공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 및 통신법 제255조(민간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에 따른 ICT 접근성 표준 제정('18)
 - 국내도 공공·민간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를 '웹'에서 '앱' 및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 (공공)「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령 제34조, (민간)「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

☑ 개선 필요시항

- 장애인·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제품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방안 필요
 - ※ 키오스크 제조·개발사는 접근성 표준을 분석하여 실제 제조·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인력 부족으로, 관련 가이드 및 리소스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21. NIA 조사)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률은 아직 미흡한 수준('21년 25.9% → '22년 34.6%)으로,
 보급 확대 필요
 - 또한, 보다 **적합한 ICT 융합 보조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
 - ※ ('20. 장애인실태조사) 보조기기가 필요하나 구입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부담' 답변이 제일 많았으며 (42.3%), 그 다음으로 '큰 효과가 없음'(15.5%), '사용 불편'(12.2%), '적합한 보조기기가 없음'(6.7%) 등이 이어짐

□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 정보소외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자환경**(User Interface) **컨텐츠 및** 가이드 개발·보급 및 플랫폼 구축 추진('23~')
- 국가, 공공기관 등이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을 **우선 조달**하도록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추진
 - * 무인정보단말기(KIOSK) 우선 지정, 단계적 지정 확대 추진

□ 디지털 역량교육 및 현황조사

- 전국 장애인 대상 인터넷·모바일 이용 및 ICT 신기술 체험을 위한 수준별·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연 4.5만명)
- 웹 접근성 국가표준이 개정('22.12)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및 실태조사 조사항목 반영을 위한 관련 법 개정*('23)
 - *「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등
-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 파악** 및 **정책 성과 측정을** 위해 **디지털 정보격차 및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 디지털 정보격차(15,000명), 웹 접근성(1,000개) 실태조사 실시(연 1회)

☑ 정보약자를 위한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보급

- 신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연간 4건) 및 보조기기 보급 지원 확대 추진('23. 5.3천 → '27. 7.5천대)
- 고령자·장애인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신체적·인지적 능력을 보조·증강하는 ICT 융합 기술개발(R&D) 추진
 - * '23~'26년(총 4년)간 국비 총 330억원 투입 예정('23년 45억원)

6-4.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한황

- 의무화('11.7월) 이후 **장애인방송 지속 확대**되었으며, 장애인방송 **맞춤형 수신기 보급** 등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지원 강화
- 디지털·미디어 기술발전에 따라 **VOD**(Video on demand), **OTT**(Over the Top), **개인미디어** (youtube 등) 비중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 IT 기술발전,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일상 속 디지털·미디어 활용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개선 필요사항

- 장애인방송 지원정책이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어 등 시·청각장애인 중심으로 추진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청격차 해소 지원 부족
- 미디어에서 재현된 장애인 이미지는 **대중의 인식에 막대한 영향 및 파급력 발휘**함에 따라, **미디어** 기반 장애인식개선 확대 필요
- 방송사 중심 제도·정책의 한계^{*} 및 기술 확보^{**} 필요
 - * 수요가 높은 VOD, OTT 등 비실시간 방송은 현행법상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가 없음
 - **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시범운영 중, 자막-수어 변환시스템 및 화면해설방송 플랫폼 구축 필요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달이 중요하나, 장애로 인해 **재난정보 수신이 어려운 재난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필요
 - * '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장애인 사망률(3.5%)은 전체인구 사망률(0.8%)의 4배 수준
- 수요 대비 부족한 장애인 맞춤형 **미디어 교육 지원 확대 필요**

집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및 참여 강화

- 고시 개정('22.12) 사항* 이행 및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편성 확대 유도
 - * 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5 \rightarrow 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 축소(30 \rightarrow 25%)
 - ** 장애인방송 총 편성·송출시간 목표 : ('23) 777,000시간 → ('27) 870,000시간
 -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등 **장애인방송 품질 모니터링단 운영** 및 **평가체계 구축 추진**
- 발달장애인 방송콘텐츠 제작·보급, 우수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작 등 통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확대
 - **발달장애인 단체·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
- 장애인방송 인식개선 홍보 영상·온라인 교육영상 송출, 카드뉴스 발행 및 대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 등 홍보 강화^{*}
 - * 유튜브, SNS(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 방송 광고, 옥외전광판, 대중교통 등

☑ 시·청각 장애인의 뉴미디어 접근성 제고

-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시범서비스 및 기능개선을 통해 인터넷 미디어 접근성 제고
 -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상용화** 추진('24~), **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시범서비스** ('23) 및 **상용화** 추진('26~)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통합 플랫폼 구축**('25~) 및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도 기반 **화면해설** 방송 콘텐츠 활성화 추진
- 다매체(지상파 UHD, IPTV 등) 지원 정보소외계층 맞춤형 통합 재난정보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서비스 추진('24~)
 - 통합 재난정보 미디어 변환시스템 및 다매체 지원 가능한 정보소외계층 맞춤형 재난정보 미디어 서비스 기술 표준(안) 마련('24~)

☑ 장애인의 미디어 역량(literacy) 교육 강화

- 시청자미디어센터(전국 10개소) 중심으로 복지관, 특수학교 등 대상으로 장애인 맞춤형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 * 장애 유형 및 정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교육도구 지속 개발
- 이미디어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지속
 확대 추진('23. 288 → '27. 320회)
 - * 방송 제작 시설·장비 탑재한 차량으로 TV, 라디오, 더빙, KIOSK 등 미디어 체험 제공

7. 이동·편의·안전 분야

7-1.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이동 보장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는 전체인구의 30% 수준*으로 **사회 고령화**, 장애인구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21)
 - * '21년 전체인구 51.639천명 중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는 15.509천명(30.0%) 추산
 - ** 교통약자 인구 추이: ('22) 15.511천 → ('24) 16.040천 → ('26) 16.818천명(장래인구추계)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수립('22.9)을 통해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 도입 확대, 여객시설 접근성 및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 시설 설치 기준 정비 및 교통문화 조성 등 추진

☑ 개선 필요시항

- 장애인의 주된 교통수단은 버스, 도보(휠체어), 지하철, 장애인택시, 특별교통수단, 택시 등 순으로, 장애인 위한 교통수단 확충 미흡
 - * 버스 40.4%, 도보(휠체어) 13.9%, 지하철 13.1%, 장애인택시 10.7%, 특별교통수단 7.1%, 택시 6.7% 등('21년 교통약자 이동 실태조사)
- 저상버스 도입, 항공기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미흡^{*}, 휠체어 탑승버스 버스운송사 참여도 저조 등 으로 일부 분야 성과 부진
 - * 저상버스 도입률 30.6%, 항공기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73.7%,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37.8% 등 일부 지표에서 3차계획 목표 미달성
 - ** 지난 2년간('21~22) 각 3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자 없음
 - 여객자동차터미널(64%), 버스정류장(45.4%)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도 목표 대비 저조. 개선 필요
- 식약처 기준에 따른 휠체어는 보행자로 규정되나(도로교통법 제2조), 새롭게 개발·보급되는 형태의 휠체어^{*} 이용자도 보행자로 인정되는지 불분명
 - * 전동보조장치를 가진 수동추진 휠체어, 고객맞춤형 휠체어, 장애인에 맞게 개조된 특수휠체어, 전지형(全地形) 휠체어 등

집 장애인 이동가능한 교통수단 확대

-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23.1 교통약자법 시행) 및 도입 지원 확대
 - *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목표) : ('23) 34% → ('27) 65%
 - ** 시내·마을·농어촌버스 등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23.1~), 광역버스 등 좌석형 버스는 표준모델 연구개발 (R&D)을 거쳐 의무화 추진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R&D, '23~'26) 및 **시범운영**, 안전 기준 등 **법령 개정 추진**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및 법정 대수 상향, 차량 종류 다양화 추진
 -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목표) : ('23) 92% → ('27) 100%
 -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이용 및 원활한 광역 이동 등 지원하기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및 운영기준 마련('23.7)
 - 대중교통이 부족한 **非도시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 상향 추진**(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 → 100명당 1대. ~'23)
 - **민간 대형택시** 및 **임차바우처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약자 지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 다양화** 추진(예. 다인승 휠체어 탑승차량 등)
- 철도 미운영 노선 등을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도입·운영 확대 및 인센티브 도입 등 운송업계 참여 유도 추진

집 장애인 교통수단 운영 개선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24시간 이용, 원활한 광역 이동** 등 **지원 확대*** 및 운영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 *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23.7월 개정법 시행)
 -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앱, 전화** 등으로 **원스탑 이용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전국 통합예약서비스** 구축 추진
 - * 거주지 시·군에 등록할 경우, 전국 어디서든 별도 추가 등록없이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등록정보 연계 추진

-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여객시설·교통수단 이동편의 시설 기준 개선 추진
 - * (예시) 휠체어 이용자 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보도 높이 조정, 시각장애인 등을 고려한 음향신호기 설치· 운영 등
 - 교통약자 실태조사(연 1회) 결과 환류 프로세스 마련하여, 개별 지자체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강화 및 조치결과 점검 실시

□ 보행보조용 의자차(휠체어) 인정 범위 확대

- 이용자 욕구 다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보급중인 휠체어**가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 (관련 법령 예시) 도로교통법, 의료기기법 등
 - 휠체어 사용자 외 다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고려, 현 의료기기법상 규정된 **의료기기 규격 수준의 휠체어 안전규격^{*} 마련 추진**
 - * (예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안전 인증기준·확인 신고 등

7-2.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증·개측, 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발생**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확대 추진('22.5.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
 - *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 강화)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300㎡→50㎡, 이·미용원 500㎡→ 50㎡, 목욕장 500㎡→300㎡,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500㎡→100㎡ 이상
- 장애인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이용·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 실시*** 및 **확대** 추진**('00~')
 - * BF 인증 현황: ('08~14) 559건 → ('17) 1,213건 → ('19) 1,755건 → ('21) 2,222건
 - ** BF 의무인증대상 확대: 국가·지자체의 신축 건축물('15.7) →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공기관 외의 자의 신축, (별동)증축, (전부)개축 건축물('21.12)

☑ 개선 필요시항

-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전 설치된 시설은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소급금지), 장애인의 시설 이용 시 불편 초래
 - * (의무설치시설)편의시설 설치율: ('03) 72.3% → ('08) 77.5% → ('13) 67.9% → ('18) 80.2%
 - 신규시설 업종(용도)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거나 같은 업종도 **면적에 따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개선 필요
 - * 현행 제도상 탁구점, 서점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근린생활시설 중 음식점 등은 50㎡ 미만인 경우 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됨
- OBF 인증 의무대상 확대에 따라 인증 신청 증가 및 절차 지연 발생 우려되며, 여전히 의무대상이 공공영역에 집중*되어 민간 확대 필요
 - * 민간시설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시설물 등 일부만 BF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21.12)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확대

-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면적 기준 강화**(바닥면적기준 삭제·축소) 및 **건축물** 용도 추가 추진
 - **대상시설 확대 방안 구체화** 및 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심사 대응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3)
 - * 소득활동·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22.12~'23.8)
 -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시행령 별표1·별표2) **개정** 추진('2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예시) >

- (면적기준)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최소 면적기준 삭제(원칙)·축소(예외)
- (건축물 용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용도 누락 방지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연계
- ex) 건축법령 상 건축물 용도 추가 시 편의시설 설치의무(원칙), 시설 특성 반영하여 설치의무 면제 (예외))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추가되는 대상시설(건축물 용도)의 의무·권장 설치 편의시설 종류 명시
 -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기존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편의시설 설치 컨설팅, 홍보 등)
 - * 현재 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행위(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가 발생한 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이력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현황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 '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원자료(raw data)로 활용
 -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행정처분 현황 등 **이력관리**를 위한 **편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차세대시스템 內 탑재, '24)
 - * 주요 기능(안): 적합성 확인(장애인편의증진센터), 행정처분(지자체 공무원) 관리 등
 -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서비스 운영** 추진('복지로 사이트 및 앱'내 '복지지도'마련, ~'24)
 - * 시범운영('23) 및 편의시설 전수조사('23) 결과 반영하여, 정식 운영 추진('24)



'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조사대상)「장애인등편의법」시행일('98.4.11)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된 건축물(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장애인등편의법」제11조(실태조사), 매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
- (조사내용)「장애인등편의법」상 대상시설이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조사
 - * 매개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객실, 판매기, 임산부휴게시설 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대

- 장애인 등의 문화·소비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민간시설**(마트, 백화점, 대형영화관 등) 중심 으로 **BF 의무인증 범위 확대 추진**
 - **BF 인증 민간시설 확대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 추진('23)
 - *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생활밀착형 시설의 BF인증 확대방안 연구'('23.2~7)
 - 연구결과 반영하여 **BF 인증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24)
 -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
- BF 인증기관 확대 및 인증운영기관 설치,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제 활성화 추진
 - **BF 인증제 의무화 및 대상시설 확대**에 따른 **인증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확대 추진**('22. 9개→'27. 15개)
 - * (BF 인증기관)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생산성본부인증원, 부동산원, 환경건축연구원, 교육녹색환경 연구원, (사)건물에너지기술원, 크래비즈인증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총 9개소
 - BF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에 따라 **BF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24)
 - * 인증운영기관 주요 기능(안) : BF 인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증기관 지원관리 및 인증시설 사후관리, 인증 관련 교육·연구 등 제도 개선 등

집 장애인 보조견 지원 확대 및 교통약자 보행편의 제고

-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기관 인력 확충 및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보조견 훈련
 두수 지속 확대('23. 28두 → '27. 48두)
-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해 보도 단절구간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가로시설물 개선 등 보행환경 개선 추진
 - *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2~'26)」('22.8. 수립)

그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21.7)*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단계적 시행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21조 개정('21.7.27 개정, '23.1.28 시행)
 - 공공부문부터 1단계 적용하고, 민간부문은 대상 기관의 유형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2·3 단계로 구분 시행
 - * 무인정보단말기는 '24.1.28부터, 모바일앱은 '23.7.28일부터 6개월 간격으로 2·3단계 확대 추진
 -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앱 접근성 검증기준***을 따르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정당한 편의 추가 제공
 -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기부)
 - **장애인등편의법 상 편의설치 의무 유무 및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고려하여,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에 대한 **예외 적용 허용**
 - * 장애인용 단말기로 교체 없이 보조적 수단을 통한 기기 제어가 가능한 경우, 정당한 편의로 간주

7-3.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에 안전취약계층 보호·지원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안전은 상대적으로 소외
- 안전교육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로 **안전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 중
 - * '22.5월 기준 전국 180여개소 운영(행정안전부 현황조사)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시, **감염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의료지원** 및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

□ 개선 필요사항

-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17~'21) **종료** 이후 재난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보호**· 지원 부족
 - 재난 시 장애인이 지자체 안내에 따라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재난안전 정보 관리** 및 **장애인 대피체계 마련 필요**
- 국내에서 운영 중인 안전체험시설 중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수가 소규모로, 장애인 **맞춤형 안전교육** 제공이 어려움
- 감염병 유행상황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료지원이 중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에 맞춘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대응 매뉴얼 지속 개선 필요

□ 국가 차원의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강화

-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 재난안전** 관련 대책 추진 검토
 -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및 재난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분류 및 보호**, **후속조치** 등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 재난 대응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 **재난안전 특화 전문인력 양성 규정*** 등 소관부처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 검토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지원인력 역량 강화 추진**
 - * (예시) 소방학과 관련 학과생 중 전문인력 양성, 소방공무원 자격시험에 장애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 시키는 등 양성방안 마련
 - 장애인의 **안전체험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유형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재난상황 시 원활한 대응 강화
 - * 기존 안전체험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안전체험관에 장애인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장애인 특성화 안전체험관 설립 등 검토
 - 재난 상황에 대비, 지자체에서 **재난안전 정보 관리** 및 **대피·지원체계 마련 독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긴밀한 재난지원 강화**
 - * 재난상황 발생 시 지자체에서 119, 경찰 등에 정보를 제공, 장애인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재난 대피소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등 사전 조치 이행 등

□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장애인 확진 및 격리 필요 상황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설치('23~24. 28병상)



○ 감염병 상황에서 **대응요령 및 감염병 정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적기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매뉴얼 고도화**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주요 내용

- (목적) 감염병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
- (내용)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활동 지원 등)
- (부록)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의사소통 지원 등)
 - 감염병 재난 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정보 습득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 및 영상 수어 상담 서비스 등 지속 추진
 - **청각장애인**을 위해 감염병 관련 브리핑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영상 수어 상담** 지원
 - 시각장애인을 위해 감염병과 관련된 인쇄물 등 배포 시 음성변환 출력 QR코드를 포함하여 원활한 정보 전달 지원

□ 감염병 재난 시 돌봄 지원체계 운영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한시적으로 가족돌봄을 허용**하여 활동지원 돌봄 공백 최소화
 - 활동지원 비수급자 및 가족 등 확진될 경우에도 긴급활동급여를 지원을 통해, 감염병 확진 시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 방지
- 감염병 상황 속에서 **발달장애 특성으로 제공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 가족** 급여 허용 및 돌봄 지원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제공기관 휴관, 대체인력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비용청구조건 완화
 - * 감염병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시간 미만으로 출석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비용 지급 등

8. 권익증진 분야

8-1.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인학대 전문 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적극 대응** 결과, **장애인학대** 사건은 지속적 증가^{*}
 - * 장애인학대 사건 수: ('18) 889 → ('19) 945 → ('20) 1,008 → ('21) 1,124건
- '21년부터 장애인학대 인지 가능성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 대상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중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시 중('16~)

` 개선 필요시항

○ 장애인학대 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규모와 인력**은 **유사 전담기관**(노인·아동)에 비해 **부족한 수준**

〈 분야별 학대전담기관 규모 비교 〉

구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 수	20개(중앙 1, 지역 19)	38개(중앙 1, 지역 37)	85개(아동권리보장원 1, 지역 84)
인력	중앙 6인, 지역 4인	중앙 12인, 지역 9인	아동권리보장원, 지역 17인

- 교육실시 현황 및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실효적 제재수단이 부재하여 체계적 교육 점검 및 사후관리 미흡
- 유사한 법정 의무교육이 중복 실시되어, 교육기관 부담 가중 및 교육 효과 저하 우려
 - * 사업주 대상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고용부), 각급 학교 대상 장애이해교육(교육부)

2. 추진과제

집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용호기관 추가 확충 및 지속적 인력 증원 추진
 - * 중앙·지역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전담인력 수: ('23) 총 101명 → ('27) 총 122명
 - 학대대응체계 개선, 피해자 사후관리 강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적관리 등을 위해 **중앙** 권익용호기관 인력 증원 추진
 - 학대대응 매뉴얼 상 신고 접수 후 **72시간 내 조사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역 권익옹호기관** 확충 및 인력 증원 추진
-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연차별 연구용역 수행 추진
 - 학대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지도 개발**('23), **학대 유형별 대응 매뉴얼 개발**('24),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25), **장애인학대범죄 처벌 실태조사**('26), **학대 행위자 상담 매뉴얼 개발** ('27) 등 추진
-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등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및 대응능력 점검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도입 추진
 - 성과평가 예비평가 실시('23)를 통해 권익옹호기관 성과지표 보완·확정. 본 평가 시행 추진('24~)
-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아동학대정보 시스템 간 정보연계 추진
- 장애인학대 고위험군 실태조사 실시 및 피해장애인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지속 운영('23~)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종 중심으로 **연 1회 학대 고위험군 장애인을 선별**하여 **방문 실태** 조사 실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 하락 추세***에 따른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직종 대상 **집중** 신고기간 운영(매년 3~4월)
 - * ('18) 43.7% \rightarrow ('19) 44.6% \rightarrow ('20) 35.2% \rightarrow ('21) 31.1% \rightarrow ('22) 30.9%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내실화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사전 안내 및 교육실적 입력·점검 및 교육자료 활용 강화 등 위해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지도방안 수립** 추진

□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 강화

-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 제작·배포 등으로 본인 신고율* 지속 제고
 - * ('18) 2.9% \rightarrow ('19) 4.0% \rightarrow ('20) 7.3% \rightarrow ('21) 7.3% \rightarrow ('22) 9.8%
-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휴대폰 개통 사기 피해 증가**에 따라, 발달장애인 **재산 및 소득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추진



202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강선우 의원)

- '20.12~21.7월 8개월간 70건 이상의 피해사례 접수(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 센터)
- 3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장애인 수 : 6천여명(SKT 4천여명, KT 1천 3백여명, LG유플러스 8백여명) / 1명이 21개 회선을 개통한 사례도 확인
 - 장애인사기 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 구제방안 마련 등 연구*('22) 결과 바탕으로 단계적 제도 개선 과제 도출 및 이행방안 마련
 - * (연구책임자)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최승원 교수('22)
 - 「전기통신사업자법」(과기부) 및 통신사 대상 가이드라인 권고(방통위) 등 소관부처별 정비 필요 법령 및 제도개선 이행과제 협의 수립·시행

`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

- 장애인식개선 교육 차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추진('23)
 - 국내·외 유사 법정의무교육^{*} 현황 비교·분석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교육 차별화 및 다각화 방안 도출
 - * 인권교육(인권위), 장애이해교육(교육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고용부)
 - 체계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관리를 위해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 모니터링 및 유사교육 평가지표 분석 등을 통해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 결과 활용 방안 마련
-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실시기관 및 대상별 교육콘텐츠 개발
 - **학생·성인 대상 교육자료 개발**, 직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 중심의 **실천편 영상자료 제작** 등 **맞춤형 교육콘텐츠 마련**('23)

〈 생애주기별, 목적별 교육 대상자 및 콘텐츠 개발 방향 〉

	생애주기별					대상별			
영유아	학생			성인	공무원·	그지의	관광		
	초등	중고등	대학	정인	공직종사자	교직원	종사자		
•교육 강의안 •유아 교구재 (보드게임 등)	•교구재 (휠체어 키트, AR통합놀이터) •교육 웹툰	•영상 콘텐츠	·영상 ·영상 · 콘텐츠 콘텐츠	•교육 강의안 •영상 콘텐츠	•영상콘텐츠 (이론편) •심화교육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교육용	•관광종사자 대상 인식 개선 매뉴얼		
	•매뉴얼			•영상 콘텐츠(실	실천편)	활용매뉴얼			

○ 지정교육기관·전문강사 확대 및 양성체계 내실화 지원

-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장애인식개선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정교육기관 및 전문강사 단계적 확대** 추진
 - * 지정교육기관/전문강사 수 : ('22) 22개소, 148명→ ('23) 32개소, 188명 → ('24) 40개소, 230명(목표)
- 교육기관 지정·운영, 지도·점검 내실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23)
- 장애공감주간(12.1~10) 프로그램 다양화 및 국민 참여기회 확대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지속 추진**('23~)
 - * 장애인복지법 개정('21.12)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함

- 공익영상 보급 확대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위한 대국민 참여 이벤트 및 오프라인 행사 활성화 지원
- 대중 인지도 높은 유투버 등 협업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 촉진



┈ (예시) 2022 장애공감주간

- (사업목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기획하여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추진방향) MZ세대 등 장애공감주간의 참여 확대 및 대국민 실천 메시지 확산
 - * 대국민 대상 배리어 프리 자막, 대체텍스트 달기 이벤트 확산
- (사업성과) 참여 인플루언서 13명, 대국민 참여건수 2천 6백명, 조회수 134만회



8-2.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19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 수는 약 316만명(치매 제외)으로, 최근 5년간 약 22% 증가^{*} 건보공단 요영급여 DB
 -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는 보편적인 현상
 - *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정신질환 실태조사) : ('21) 27.8%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해 **전국 346개소 정신재활시설**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98~)
 - 일부 기관에서는 독립생활 및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가족지원가*** 육성 지원 중
 - * 정부 차원에서 역할·교육과정 등에 대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정신질환·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 등 **인식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의 날(10.10)' 행사, '정신건강 홍보주간' 운영 중('21~)

□ 개선 필요사항

-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크고*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일자리 등 복지 서비스 부족
 - * 전체 시설의 46%(160개소)가 수도권 밀집, 228개 시군구 중 105개소는 부재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배제)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및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정신장애인 관련 예산 지원이 부족하고, 수행기관의 역량 및 경험 부족으로 가시적 성과도출에 한계
 * (22년) 4.5억 → (23년) 4.5억(전년동)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신장애인 자립 및** 지역사회 통합의 저해 요인
 - * 공동생활가정 운영 반대('19.4, 부산), 정신병원 개원 반대('19.5, 오산)

2. 추진과제

집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수요 및 공급추이 분석을 통해 자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 및 우선순위 선정, 서비스 확대 추진
 -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및 행정·예산부담** 등 분석('23.上)
 - * 서비스 수요, 공급 현황 및 향후 수요변동 예측치 등
 -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수요, 우선순위, 소요자원 등을 고려, **서비스 대상 및 확대량, 확충 이행 방안 등 마련**('23.下)
 - * 국토부(또는 LH), 고용부 등과 협의, 서울시·경기도 등의 사례 참고



주요 확충필요 서비스(예시)

- ① (정신재활시설 개선) 시설 확충, 시설 유형 표준화(주거, 사회적응, 직업재활 등) 등
- ② (주거 지원) 국토부·토지주택공사(LH) 등의 주택지원사업 연계, 지자체·민간사업 등을 활용한 주거 환경 개선 등
- ③ (고용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동료지원가 일자리 창출, 취업훈련 상담·보호작업장 연계. 고용 안정 지원
- ④ (기타) 당사자 재활 지원, 동료지원가 양성·지원, 위기쉼터 설치, 가족·당사자 지원 등
-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활동 지원 강화 추진
 - 미설치 시군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지자체 확충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 수립 추진
 -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역할 수행 강화를 위해 시설 유형 및 역할을 기능 위주로 재분류 검토('24)
 - * 현재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등 6종류로 분류
- 정신장애인의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 지침 개정 검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집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자기결정권) 강화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질환자 권익용호 사업 확대 추진
 - 국내·외 사례 분석, 그간의 사업내용 및 현장의 수요 등을 기반으로 주요 기능 및 **사업모델** 마련('24)
 - 단체 육성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권익용호사업 확충
-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해 **회복된 당사자 및 기족**을 **동료·기족지원가로 양성**하고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활동에의 참여 보장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현장 수요 등을 기반으로 주요 기능과 운영방식 등 **동료 및 가족지원가** 양성방안 마련('24)
 - 국공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참여기회 우선 제공('24), 우선 추진 결과 분석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확산방안 마련('25~)

집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활성화 지원

- 정신건강의 날 및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활용하여 각종 기념식, 심포지엄, 문화행사 등 대국민 인식 개선 추진
 -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민 체감도 증진** 등 위해 **환자 가족과의 대화**, **대국민 정신건강 포럼 개최** 추진
 -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행사 등 발굴·지원 추진('23~)
- 언론 등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 가이드라인(안)** 마련('24~25)
 - * (유사사례) 「자살예방법」상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8-3.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및 차별 해소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 등 위해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중('12~)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중앙1, 지역 17개소) 및 **전담 코디네이터** 통해 임신, 출산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실시 중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중('00~)
 - * 장애인성폭력피해상담소 23개소, 장애인가정폭력피해상담소 4개소, 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개소, 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9.4)에 따라,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 추진 중(20.11월 국회 제출)

□ 개선 필요시항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제도 도입 후 **지원 수준 개선이 미비***하여 **신청 절차 간소화**, **제도 홍보** 강화에도 **사업 집행률 저조****
 - * '22년 출산비용 지원금은 출산(유·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으로 '12년 사업 시행 이후 인상 없이 동결
 - ** 출산비용 지원 불용액 추이 : ('19) 293백만 → ('20) 220백만 → ('21) 275백만원
 - 분산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지원제도**(상담·사례관리·비용지원 등)를 대상자 상황에 맞게 **안내·연계** 해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부족
-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부모의 정신상태·신체질환 등으로 인한 **낙태 허용** 및 **부양의무자 동의** 갈음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필요

2. 추진과제

□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모성권 보호 강화**를 위해 **출산비용 지원단가 인상** 추진(출산 및 유·사산 시 1백만원 지원 중)
- 출생신고와 출산비용 지원서비스 미신청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출산비용 지원대상 적극 발굴 및 적기 지원 추진
 - *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제출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모성보건사업과 연계**, 출산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 추진

` 장애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권리성 보장

-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19.4)에 따라, 장애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권리성 보장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 우생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혐오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삭제** 추진('20.11, 정부안 국회 제출)



고자보건법 정부 개정안 주요내용('20.11월 국회제출)

• (모자보건법 개정안) 한정된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유전질환, 질병, 강간 및 근친상간 등) 폐지 및 임신 중기(15~24주) 임신중절 허용을 위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 지원근거 마련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추진 및 평가·컨설팅(3년 주기), 종사자 보수 교육 등 통해 서비스 질 제고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 및 돌봄비용 지원사업 지원 지속 추진

8-4.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국제적 정책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도 장애인 국제 전략 추진^{*} 등 장애인정책 국제협력은 지속 확대 추세
 - * 제3차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13~'22) 선포('12.11, '인천전략') 및 이행
 - ** 국제장애인협력 공모사업 추이 ('16) 1건 → ('18) 4건 → ('20) 5건 → ('22) 8건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비준('08.12) 이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이행점검 중('22.9,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완료)
 - * (1차 국가보고서) ^{'11년}제출, ^{'14년}심의, ^{'14년}최종견해 통보 (2·3차 국가보고서) ^{'19년}제출, '22.8.보완보고서 제출, '22.8.심의, '22.9.최종견해 통보
 - 국회 비준('22.12)을 거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개인 진정, 직권조사권 인정) 가입 완료('22.12)

☑ 개선 필요시항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천전략 이후 장애인 국제협력 추진 부진***하고, **국제협력 사업 연속성 확보 미흡****
 - * 인천전략 종료('22.10, 자카르타) 후 포스트 인천전략 및 '제4차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추진 방안 논의 미흡
 - **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장기 로드맵.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관련 자료 공유 플랫폼 등 부재
- 국가적 차원의 과제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범부처 협력**하에 **종합적인 이행방안** 마련 필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개인 진정 지원체계 마련, 이행 모니터링 기구 신설 등 **사전 준비 필요**

2. 추진과제

☑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및 국제협력 분야 민관협력 확대

- 장애인정책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 거점으로서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추진
 - 장애인개발원 중심으로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를 설립 검토하여 국제적 차원의 **장애인정책 분야** 민관협력 **사업 체계적 추진**
 - *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추진('23)
-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장애전문가 초청연수, 국내·외 장애인 당사자 단체 대상 역량 강화 사업 등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사례) 개발도상국 장애전문가 초청연수 사업, 국별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및 장애 분야 국제협력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 등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 확대** 추진을 통한 장애인정책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24~)
 - * 개발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장애 관점을 포함하고, 장애인이 개발 과정 및 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
 - 시민사회의 장애 분야 전문성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활용하여 민관협력 기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사업 점진적 확대 추진**
- **장애인 국제협력 자료 전반을 공유**하여 민관협력 확대 지원을 위한 장애인 국제협력 **오픈아카이브** 구축 추진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 전략 수립

○ 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 이행전략 마련('23~)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주요 내용('22.8)

장애 개념 확대, 장애인권모델 반영 장애평가시스템 변경, 정신장애인의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포함, 장애인차별구제 소송 부담 경감, 장애 관련 정책에서 장애여성 주류화, 건축연도나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건축물의 접근성 확보, 대체의사결정체계를 지원의사결정체계로 전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 검토 및 예산 확보, 포용적 교육정책 수립, 정신장애인의 취업 제한 법률 폐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책 마련, 보호고용에서 개방고용으로 전환 등

- 권고사항 이행 평가를 위한 핵심과제 개발, 이행과제 부처 간 협의·조정 등 위한 **범부처 종합 이행** 방안 마련 연구 실시('23)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방안 마련**('23)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쳐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의 심의·의결 추진**('24)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 실효성 제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주요내용

- 자국 내 권리구제 절차(사법적 성격)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집단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이하, '개인진정제도')
 -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홍보 및 개인진정 지원사업 추진('23) * (예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진정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등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인진정제도 마련 연구용역** 추진('24)
 - 지원인력 양성, 유엔 조사 대응, 절차법 제정 검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국내 개인진정제도** 마련방안 연구·도출
 - 연구결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단체 등 협의를 통해 **국내 개인진정제도 마련 및 추진** 체계 수립 추진('25~)

9. 정책 기반 분야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06) 이후 **장애 개념은 기존 의학적·기능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로 확장 추세^{**}
 - * (사회적 장애 모델) 구성원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한 사회참여 저해 → 장애 인정
- ** (독일) 장애란 개인의 신체·정신·정서적 이상과 사회적 참여의 침해에 대한 상호작용, (호주) 핵심활동제한 (의사소통·이동·자기관리), 사회참여제약(고용·학습) 중심으로 포괄적 장애개념 제시
-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정책 조정을 위한 최상위 정책 거버넌스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중 (위원장: 국무총리, '00~)
 -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장애계, 학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30인 이내로 구성

` 개선 필요시항

- 장애인 정책·제도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따라 장애인정책 조정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사무국 부재 등으로 운영 활성화 어려움
- '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후 전달체계가 분절적으로 도입되어 장애정책 전달체계의 파편화 심각
- 장애정책 연구·행정 지원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10~) 운영 중이나, 노인·아동 등 타 분야 대비 기관 조직 및 기능은 다소 부족

2. 추진과제

집 장애 개념 확대(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 추진

- 현행 장애인복지법(제2조) 상 **의학적 장애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적 장애 모델 도입** 위한 **장애인권리** 보장법안 국회 논의 지원('23~)
 -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혜영('21.9), 김민석('21.10), 최혜영('21.11), 이종성('22.11)
- 다만,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비용 절감**을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개념 및 등록제는 존속

□ 장애인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 장애인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또는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 사무국 신설 등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23~')
 -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 중

▷ 장애인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범정부 장애정책 전달체계 점검 연구('24)를 통해 실태 분석 및 분절적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하고 법·제도 개정 추진('25~)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아동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원 설치

○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23~, 국회 법안논의 지원)

1. 추진체계

- (성과 평가)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달성도와 함께 삶의 질 개선 정도 등 정책 추진 결과 측면에서 성과 평가 실시
 - 9대 정책 분야별로 장애인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목표(생활만족도, 고용율, 이동·편의 개선 등) 지표 설정 및 성과 평가 실시
- ☑ (평가체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주요 정책성과 및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정책 목표 달성도를 평가
 - **제6차 종합계획 이행 수준**에 대한 **매년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하여 평가 기초자료 마련(한국장애인 개발원 위탁)
- (소통 환류) 장애인 당사자, 학계·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활성화 및 장애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 국민 소통창구 마련 추진
 -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정례화,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계 및 학계, 현장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소통 활성화**
 - 제6차 종합계획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고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정책 소통 증진** 등 위해 온·오프라인 대국민 소통창구 마련
- (장애분리통계) 장애인 정책 수립 및 효과 검증 강화를 위해 장애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통계청 협의 및 관련 법안 개정 추진

2. 과제별 성과지표

2-1. 복지·서비스 분야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3	Ŧ	
1-1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 활동지원 대상자 지속 확대 및	• 활동지	원 서비	스 이용	률(등록장	y애인 중)
1-1-1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23	'24	'25	'26	'27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서비스 다양화 및 가족급여 확대 방안 검토	9.2%	9.8%	10%	11%	11.7%
		포크크6 년1, 시리시티 기시	• 개인예	<u></u> 산제 이동	S자 비율(활동지원	수급자 중)
1-1-2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23	'24	'25	'26	'27
			모의 <u>적용</u>	1.8%	3.8%	50%	50%
		• 발달재활 지원규모 확대 및 연령	• 발달재	활서비스	느 이용지	수(만명	!)
1-1-3	장애아동 복지 지원체계 고도화	상향 검토 • 장애아양육지원 단계적 확대 및	'23	3	→		'27
	<u>北</u> 도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	7.9)	→		10
1-2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	체계 마련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23) 및 제공 추진('24.6월)	• 최중증	발달장	애인 통	합돌봄서	비스 도입
1-2-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23	'24	'25	'26	'27
1 2 1	돌봄 지원체계 구축		개발	시행 (6월)	운영	평가 · 보완	운영
		• 활동서비스 월 제공시간 확대	• 낮활동	서비스	이용률(밝	발달장애역	인 중)
1-2-2	발달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고도화	및 활동지원 차감분 폐지	'23	'24	'25	'26	'27
	시미스 고도와	•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7.7%	8.9%	10%	11.1%	12.3%
			• 발달장	애인 부 <u>!</u>	고·가족 ·	지원 대성	남 수(천명)
1-2-3	발달성애인 무모 및 가족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지속 확대	'23	3	→		'27
	\\\ \alpha = \(\)	레이지 시크 릭테	30		→		50
1-3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	결정권 강화	1				
1-3-1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시범시업을 거쳐 안정적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 모형 마련 및 본사업 시행			-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i>취</i>	진		
1-3-2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	•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	'23	'24	'25	'26	'27	
1-3-2	및 서비스 고도화	집중형 전문기관으로의 전환	모델	시범	시범	시범	결과	
			개발	사업	사업	사업	평가	
			• 건설형	공공임대	배주택 신	규물량	중 장애인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급 비율				
1-3-3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장애인	'23	'24	'25	'26	'27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 공급 추진	수도권 8%	수도권 8%	수도권 8%	수도권 8%	수도권 8%	
			비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	비수도권	
			5%	5%	5%	권 5%	5%	
			• 연간 정	당애인주택	택 개조지	1원 수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도시 지역 확대	• 농어촌·도시 거주 장애인의	'23			-	'27	
1-3-4		자가·임차주택 개조지원사업	1,500호					
		단계적 확대 추진	(농어촌1,000호+ → 1,6002					
				도시500	호)			
1-4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						
			• 서비스제공인력 양성·교육 및 제공기관					
		• 활동지원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1-4-1	전문인력 양성,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체계 개선 • 주간·방과후활동 평가체계	'23	'24	'25	'26	'27	
	Q. Lallell I d	도입 및 보수교육 확대	연구	개발	시행	모니	평가	
						터링		
		• 지표개발 연구 및 고시개정전문	• 서비스	지원종힙	조사 고	시 개정		
1-4-2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 시표개월 연구 및 고시개성신문 위원회 운영	'23	'24	'25	'26	'27	
	반영하는 종합조사표 개발	• 개선안 반영한 고시 등 법령 개정	개정안	개정	_		_	
			마련	추진				
		• 장애인정 개선안 마련을 위한	• 장애정	도판정기	준·심사	규정 개	정	
1-4-3	장애인정 기준 및 예외적	연구 및 사회적 합의 • 개선안 반영한 「장애정도판정 기준」,「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등 법령 개정	'23	'24	'25	'26	'27	
1 4 3	절차 확대		관련	개정안	개정	_	_	
			연구	마련	추진			
		O HO 110						

2-2. 건강 분야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2-1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기	지원체계 확립						
			• 장애인	건강보	건관리 종	등합계획	수립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른	'23	'24	'25	'26	'27	
2-1-1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 계획 마련	연구	발표	이행 모니 터링	이행 모니 터링	이행 모니 터링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전달체계 강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 지역장	애인보건	의료센터	수(개 <u>:</u>	소)	
2-1-2		확대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산시스템	'23	3	→		'27	
		구축	17		→		19	
2-1-3	장애인 재활의료 전달 체계 고도화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대상기관 확대권역재활병원 단계적 개원						
2-1-4	어린이 재활의료 기반 구축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단계적 개원어린이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전국 확대	-					
		•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화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재활운동·체육 제도화 및 활성화					
2-1-5	재활운동 및 체육 기반 마련		'23	'24	'25	'26	'27	
		• 재활운동 및 체육 공급 확대	조사· 연구	협의체 구성	방안 수립	이행	이행	
2-2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	화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건강주	치의 참(겨 장애인	<u></u> 수(백	명)	
2-2-1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23	'24	'25	'26	'27	
		• 방문재활서비스 신규 도입 추진	27	30	33	36	40	
			• 장애친	화 산부역	인과 운영	를 수(개:	소)	
			'23	3	→		'27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10		→		15	
2-2-2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 •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수 (누적, 개소)				수	
			'23	3	→		'27	
			14		→		17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Ŧ		
			• 장애인	보조기	기 지원	품목 =	수(종))
			'23		→		'27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38		→		46	j
		• 지원 품목 및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 •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	• 건강보험	험 급여	확대			
2-2-3	및 내실화		'23 '24		1 '	'25	'26	'27
	X "E"		맞춤형 교정인솔 급여확대 		기, 중: 남동 면 급(증아동 관련 겨확대		
2-3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	스케어 활성화						
	지에이 계획 지기 드너	장애인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기술 연구개발 추진(예타) 장애인·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장애인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연-				구개발	
2-3-1	장애인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연구개발(R&D)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개발	'23	'24	'25	'26	,	27
	파극화 한士/NaD/	및 실용화 R&D 추진	예타	예산	본사업	연구		변구
		• 기술기반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추진	확보	시행	개발	7	<u> 발</u>
		디지터 웹 사기가 가스의 취이는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발간					
	디지털 헬스케어·빅데이	• 디지털 헬스기기·기술을 활용한 다자간 건강관리 체계 모델 연구	'23	'24	'25	'26		'27
2-3-2	터 기반 장애인 건강관리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기반 장애인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		4년도
	생태계 조성 연구(R&D)	건강정책 발굴・연구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발표	발표	발표	발표		발표

2-3. 보육·교육 분야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3-1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TINIMON HO TIN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 수(개소)					
3-1-1	장애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	'23 → '27					
	- 2최		1,650 → 1,970					
		• 사업 명칭 변경, 지원대상 확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수혜자 수(명)					
3-1-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및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한 정밀	'23 '24 '25 '26 '27					
	활성화	검사 수검 활성화	3,000 3,250 3,500 3,750 4,000					
		• 영아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및	• 유치원에 설치된 특수학급 수(개)					
3–1–3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통합유치원 확대 추진	'23 '24 '25 '26 '27					
	지원체계 강화	• 영유아 특수교육 정보 전달체계 강화 및 양육자료 보급	1,517 1,597 1,677 1,757 1,837					
3-2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유 지원 강화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일반-특수교사 통합교육 조성	• '정다운학교' 운영 학교 수(교)					
3-2-1		위해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 •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확대 및 교원 연수 강화 추진	'23 '24 '25 '26 '27					
			120 140 160 180 200					
		• 졸업 후 대학·지역과 연계한	• 대학·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수(기관)					
3-2-2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전공과 도입 및 운영 추진	'23 '24 '25 '26 '27					
	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	•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고도화	1 2 4 8 10					
3-3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	회 확대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 수(교)					
3-3-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체계 강화	및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 확대	'23 → '27					
	세계 영천	•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개발 및 대학생활 체험·적응 지원	10 → 15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단계적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수(개)					
3-3-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확산	'23 → '27					
	기반 조성	• 장애학습자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지원 확대 추진	53 → 100					

2-4. 경제활동 분야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4-1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4-1-1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대상자 단계적 확대및 장애인연금 단가 인상 추진장애수당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	0 "		득 중 공 계금융복		と득 비중	
4-1-1	확대	재산 기준 개편 적용 및 지원	'23	'24	'25	'26	'27	
		확대	_21.2	22.2	23.3	24.5	25.7	
		• 장애인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및	Oult V					
4-1-2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23	3	→		'27	
		• 직업재활지원사업 활성화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강화	29,5	46	→	39	9,546	
		• 생산시설 운영개선 및 생산품목	• 중증장	애인생신	시설 장(개인근로	자 수(명)	
4-1-3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24	'25	'26	'27	
110	촉진 지원	• 우선구매 비율 확대 및 공공기관	'23 14,000	14,700	15,400	16,100		
4.0	-IO TIO III TOOLTA 3	구매촉진 유인체계 마련						
4-2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작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및 장애친화경영 지원 확대	Sale means en ale 10					
4-2-1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23		→		'27	
		확대 및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147	7	→		181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 장애인 맞춤훈련 위한 디지털	• 디지털훈련센터 설립 수(누적, 개소)					
4-2-2	육성 및 장애인 고용기회	훈련센터 전국 확대 추진 •센터 연계 디지털 맞춤형 직무	'23	3	→		'27	
	확대	개발 및 일자리 확대	6		→		17	
		•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 위한	• 맞춤형	보조공	학기기 지	 1원 수(천	 천점)	
4-2-3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23	3	→		'27	
	│ 지원 │	•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자 지속 확대	14		→	1	16.5	
4-3	장애인 벤처·중소기업 지							
	0 112 E-1 64-1B M	• 장애인 창업컨설팅·교육 및	• 장애이	찬언커	설팅 수료	무호 차	어륲(%)	
4-3-1	장애인 창업지원	창업 사업화 지원 추진	'23	'24	'25	'26	' 27	
4 5-1	이에긴 정비시면	• 창업보육실 지원 강화 및 발달	44	46.2%		50.9%	53.4%	
		장애인 특화사업장 확대						
	TI0 0 7 0 1 7 - 1	• 장애인기업 기술, 마케팅, 공공 판로 지원 및 관련 법·제도 개선	• 지원사	업 수혜	기업 평균	군매출액(백만원)	
4-3-2	상애인기업 성장기반 추지		'23	'24	'25	'26	'27	
	구축 지원	• 공공기관 상애인기업 우		677	696	716	736	757
		촉진 및 제도 개선						

2-5. 체육·관광 분야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5-1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지	원 확대	
5 4 4	사회통합 체육시설 인프라	• 장애인형 반다비 체육센터 전국 확대 및 운영 고도화	• 건립 선정된 반다비체육센터 수 (누적, 개소)
5–1–1	확충	•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관	'23 → '27
		연차별 확대 추진	91 → 150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
5-1-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 확대·지원금액 제고	'23 '24 '25 '26 '27
		지글 국내 자신리국 제포	69% 71% 73% 75% 77%
	장애인체력인증센터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지속 확대 설치 추진	3-112 - 11 12 3 2 1 2 3 1 (1 1; 11 <u>-</u>)
5–1–3	지속 확충	• 반다비 체육센터와 연계하여	'23 → '27
		확대 운영 추진	14 → 26
	장애유형·정도·연령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생활체육교실을 위한 장애 유형· 정도·연령별 특화 프로그램 지도 매뉴얼 개발·보급	• 장애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지도 매뉴얼
5-1-4			'23 '24 '25 '26 '27
			매뉴얼 <u></u> 개발 보급 보급 보급 보급
5-2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	기반 확충	
		• 관광취약계층도 접근 가능한	• 열린관광지 조성 수(누적, 개소)
5-2-1	장애인 관광 접근성 제고	열린관광지 지속 확대 추진 • 특화 관광콘텐츠 조성, 시설	'23 → '27
		모니터링 등 운영 내실화	132 → 252
		• 관광지와 편의시설 연계한	•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수(누적, 개소)
5-2-2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무장애관광도시 조성·확산 • 무장애 통합서비스 제공 및	'23 → '27
		관광상품 활성화 지원	1 → 13
		• 장애인·노인 등 관광취약계층	• 관광취약계층 행복나눔여행 지원 수(명)
5-2-3	장애인 관광 참여 기회 확대	행복나눔여행 지원 지속 확대 • 무장애 관광정보 발굴 및 관광	'23 '24 '25 '26 '27
	푁 네	플랫폼 고도화, 인식개선 등	500 500 500 500 500

2-6.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분야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6-1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6-1-1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교육 등 지원 • 문화시설 접근성 실태조사 및	* 문화시설 접근 '23 '24 매뉴얼 배포・	'25 배포· ['26 개뉴얼	'27 배포·	
6-1-2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확대 •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 및 시범운영, 전국 확산 검토 • 시설 향유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 그램 개발, 운영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23 →			개선제작 교육 원 건수(건) '27 75	
6-2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6-2-1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정책 제도화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거점 장애예술인 표준공간 조성 및 장애예술단체 운영 지원 	* 장애예술인 창천 '23 '24 300 400	'25	겨인원 '26 600	수(명) '27 700	
6-2-2	장애예술인·단체 창작물 유통지원 확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도입 추진(시행령 개정)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지원 플랫폼 개발 및 구축·운영	• 장애예술작품 '23 '24 구축 구축	유통매개 음 '25 10	품목 수 '26 20	(종) '27 20	
6-2-3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 매개자 양성 교육체계 구축	 문화예술 전문인력 제도 내 매개인력 양성교육 체계 마련 장애예술인 교육 및 심화과정 개설, 장르별 심화교육 지원 	• 장애예술인 예위 '23 구축	술교육 프 <u>·</u> →	,	수(개) 27 16	
6-3	ICT 기반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6-3-1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자환경 UI 가이드 개발·보급 접근성 개선된 지능정보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도입·확대 	• 무인정보단말기 '23 '24 UI가이 UI가이 드 개발 드 개발	'25	드 개빌 '26 보급· 확대	·보급 '27 보급· 확대	
6-3-2	디지털 정보격차 및 접근성 수준 측정	•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수준 파악 및 격차 해소 평가를 위해 정보 격차 실태조사 실시	• 디지털 정보격 '23 '24 15,000 15,000	'25	나 대상 '26 15,000	수(명) '27 15,000	
6-3-3	정보 약자를 위한 디지털 기기 보급	신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지원 확대 신체·인지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ICT 융합기술 개발 추진	• 신규 정보통신 '23 5,300	보조기기 → →	,	수(점) 27 500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_		
6-4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이행 독려	• 장애인	방송 총	편성·송	출시간(시	시간)	
6-4-1	장애인 미디어 접근 및 참여 강화	및 제작·편성 확대 • 바다자에이 바소 저그성 제고	'23	'24	'25	'26	'27	
	심어 강화	• 발달장애인 방송 접근성 제고 및 장애인방송 인식개선·홍보	770,000	795,000	820,000	845,000	870,000	
	시·청각 장애인의 뉴미디어 접근성 제고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시범운영 및 개선, 상용화 화면해설방송 통합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제작 활성화 정보소외계층 맞춤형 재난정보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AI기반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23	'24	'25	'26	'27	
6-4-2			자막· 수어 변환 시스템 시범운영	음성· 자막 변환시스 템 상용회		자막· 수어 변환시스 템 상용화	음성· 자막· 수어 변환 시스템 서비스	
6-4-3	장애인의 미디어 역량 교육 강화	• 소외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확대 • 장애인 맞춤형 디지털미디어 역량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찾아가 ' 23 288	3	어 나눔 ^바 → →	!	횟수(건) '27 320	

2-7. 이동·편의·안전 분야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7-1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이동보장					
7–1–1	장애인 이동가능한 교통	• 저상버스 도입 지원 확대 및 저상좌석버스 도입 추진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확대	• 시내 ⁷ 표(%) '23	付상버스,	/특별교통 ' 25	통수단 도 '26	입률 목 '27
	수단 확대	및 법정대수 상향, 차량 다양화 •철도 미운영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 확대	(저)34	(저)37	(저)50		(저)65
	장애인 교통수단 운영	•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이용,	등)			화(시간・1	범위·대상
7–1–2	-1-2 개선	Z 기선 기상	'23	'24	'25	'26	'27
		표준화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법령개정 추진	개정완료, 시행	추가개정 검토	모니 터링	모니 터링
		• 여러 유형의 휠체어를 법령상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포함하도록	• 보행보	조용 의계	다차 인정	성범위 획	대
7–1–3	7-1-3 보행보조용 의자차	법령 정비 추진	'23	'24	'25	'26	'27
, ' (휠체어)	(휠체어) 인정 범위 확대	• 의료기기 규격을 준용하여 휠체어	법령개정	개정완료,	추가개정	모니	모니
	안전규격 마련		추진	시행	검토	터링	터링
7-2	일상생활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를	• 편의시설 설치 확대				
7-2-1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위한 정책연구 실시	'23	'24	'25	'26	'27
	시설 확대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추진	법령개정	개정완료,	추가개정	모니	모니
			추진	시행	검토	터링	터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새로짓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등에 BF인증 추진	• BF 인				
7-2-2	(BF) 인증 확대	• 인증 대상시설 확대(백화점,	'23	'24	'25	'26	'27
	(5.7 20 1 11	대형마트 등)	2,188	2,254	2,322	2,391	2,463
	장애인 보조견 지원 확대	. 파에이 나무거 저무이려 항호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두	수(두)	
7-2-3	및 교통약자 보행편의	• 장애인 보조견 전문인력 확충 및 훈련 두수 지속 확대 추진	'23	3	→	,	27
	제고	X EC TT 717 441 TC	28		→		48
7-3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 강화					
			• 장애인		던 대책	마련·시	
	국가 차원의 장애인	•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범정부	'23	'24	'25	'26	'27
7–3–1	국가 자원의 상애인 재난안전 대책 강화	차원의 장애인 안전대책 마련· 시행 추진	관계부처 협의	관계부처 대책 마련	범정부 재난안전 대책 포함	이행 모니터링	이행 모니터링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 돼에이 뭐다 자여버 버셔 미크	• 감염병 병상 설치(총 28개)					
7–3–2	7-3-2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 장애인 전담 감염병 병상 마련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23	'24	'25	'26	'27	
7 3 2		고도화	병상 확충	병상 확충	운영	운영	운영	
			• 감염병	형 재난 시	돌봄 기	디원체계	운영	
	감염병 재난 시 돌봄	• 감염병 유행 시 활동지원 긴급	'23	'24	'25	'26	'27	
7-3-3	7-3-3 지원체계 운영	급여 제공, 가족돌봄 한시 허용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등 긴급돌봄 지원체계 운영	발생 시	발생 시	발생 시	발생 시	발생 시	
			긴급지원	긴급지원	긴급지원	긴급지원	긴급지원	

2-8. 권익증진 분야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Ė	
8–1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	옹호 강화					
			• 장애인	학대 전	담인력 수	누(누적,	명)
			'23	3	→		'27
	8-1-1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10	1	→		122
		• 장애인학대 신속 대응(72시간)을	•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성	과평가	
		위해 담당인력 증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23	'24	'25	'26	'27
8–1–1		도입 • 장애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예비 평가	본평가	본평가	본평가	본평가
			• 장애인	학대 집	중신고기	간 운영	
			'23	'24	'25	'26	'27
			고위험군 방문	집중신고 기간	집중신고 기간	집중신고 기간	집중신고 기간
			실태조사	710	710	716	710
0.1.0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안내 및 교육, 실적					
8-1-2	교육 내실화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사후 지도 추진			_		
			• 발달장	애인 맞	춤형 학대	배예방교육	2
			'23	'24	'25	'26	'27
		•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자료 제작	자료 배포	자료 배포	자료 배포	자료 배포
8-1-3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 강화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을 통한 본인 신고율 제고	• 발달장	애인 사	기 피해	관련 소	관부처별
	0-1	• 발달장애인 대상 사기 피해 예방	정비 필	실요법령	및 제도기	H선 이행:	과제 협의
		및 구제방안 마련	'23	'24	'25	'26	'27
			제도협의			제도협의	제도협의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방안 연구	•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	이행률(%	6)
8–1–4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및 마련 • 맞춤형 교육컨텐츠 보급 및 교육기관·전문강사 단계적 확대	'23	'24	'25	'26	'27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		94	95	96	97	98
		•국민 참여형 장애공감주간 운영		ı		1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	II		
8-2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						
			• 정신재 [:]	활시설 혹	학충 및	기능보장	당 수(개소)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 정신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구분	'23	3	→	'27	
8-2-1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사업 추진	확충	1		→	3	
			보강	16	6	→	24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동료 및 가족지원가 양성 및	• 정신장(애인 동료	로·가족	지원가 영	양성 수(명) 	
8-2-2	(자기결정권)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참여 확대	'23	'24	'25	'26	'27	
	, , , , _ ,			250	250	250	250	
			• 당사자	참여 정	신건강.	포럼 개최	의 횟수(회)	
8-2-3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 정신건강 포럼 등을 개최하여	'23	'24	'25	'26	'27	
0 _ 0	활성화 지원	활성화 지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3	4	5	5	5
8-3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및	차별 해소						
		• 지원수준 개선 위해 출산비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					
8-3-1	여성장애인 출산 및	지원단가 인상 등 검토	'23	'24	'25	'26	'27	
	영육지원 강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70	72	74	76	80	
			• 모자보	건법 제1	14조 기	배정 추진		
	장애여성 인공임신중절	• 우생학적 관점에서 장애인 출산의	'23	'24	'25	'26	'27	
8-3-2	권리성 보장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모자	국회	법령				
		보건법 개정 추진	논의 지원	개정	시행	시행	시행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신규 설치	7174		T	יוטוטן דו	OLVITA/21/	
0.0.0	여성장애인 성·가정폭력	•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도입 및	· 가성· 선 '23	· '24	남소 ở '25	·' 26	원실적(건) ' 27	
8-3-3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컨설팅, 보수교육 지원	23 56천	24 58천	25 60천		64천	
		• 성폭력 피해장애인 치료동행 서비스 및 돌봄비용 지원		30 1	00 [02.0	046	
8-4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ił	1					
8-4-1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및 국제협력 분야 민관협력 확대	•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및 국제협력 오픈아카이브 구축			-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 전략 수립					
	으에자(에이귀리형야	•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범정부	'23	'24	'25	'26	'27	
8-4-2	8-4-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 전략 수립	차원의 협약 이행 전략 수립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상소위 신의	이행 모니터링	이행 모니터링	이행 모니터링	
			•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 실효성 제고					
	LIN CDDD MEHOLTH	•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23	'24	'25	'26	'27	
8-4-3	UN CRPD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 실효성 제고	지원 방안 단계적 추진 및 국내	교육,		이행체계	이행체계	이행체계	
	그네 시오 글파오 세포	이행체계 마련	프팍, 홍보	연구용역	마련	마련	마련	
					입법지원	입법지원	입법지원	

3. 재정투입 계획

※ 전체 장애인정책 관련 예산 중 제6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 예산만 포함

□ (재정투입 계획) 제6차 종합계획('23~'27)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 수준(잠정치, 국비 기준)

〈 재정투입 계획(안) 〉

(단위: 억원)

구분	총계	2023	2024 ~ 2027
복지·서비스	176,905	24,431	152,475
건강	3,306	757	2,549
보육·교육	1,713	249	1,462
경제활동	108,514	19,942	88,573
문화예술 디지털·미디어	3,170	479	2,692
체육·관광	7,234	1,323	5,912
이동·편의·안전	11,225	2,235	8,990
권익증진	726	104	621
계	312,793	49,519	263,274

^{*} 연차별 투입계획(안)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제별 담당부서(기관)

4-1. 복지·서비스 분야

연번	ᄌᅿᄀᄓᆒ		세부 추진과제	담당기관(부서)	
언인	중점과제	연번	과제명	=	B당기선(구시)
	장애인 맞춤형 1−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1-1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1		1-1-2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서비스과
		1-1-3	장애아동 복지 지원체계 고도화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2-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2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1-2-2	발달장애인 낮 활동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정책과
		1-2-3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지원 확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3-1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추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0	장애인 자립 및 주거	1-3-2	장애인거주시설 전환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정책과
1-3	자기결정권 강화	1-3-3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신규 공공 임대주택 공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1-3-4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도시지역 확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1-4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	1-4-1	전문인력 양성,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4		1-4-2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종 합조사표 개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4–3	장애인정 기준 및 예외적 절차 확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2. 건강 분야

αш	줘ᄀᆌ		세부 추진과제	담당기관(부서)	
연번	중점과제	연번	과제명	=	[당기판(무서)
		2-1-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2-1-2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강화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2-1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2-1-3	장애인 재활의료 전달체계 고도화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의료기관정책과
		2-1-4	어린이 재활의료 기반 구축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2-1-5	재활운동 및 체육 기반 마련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2-2-1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2-2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	2-2-1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구강정책과
		2-2-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혁신기술 기반	2–3–1	장애인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연구개발 (R&D)	복지부	보험급여과 장애인건강과
Z-3	2-3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2-3-2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장애인 건강관리 생태계 조성 연구(R&D)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건강보건연구과

4-3. 보육·교육 분야

ан	즈저기제		세부 추진과제	E	hch717H/日 H\
연번	중점과제	연번	과제명		남당기관(부서)
	T-01 T 71H-174 D1	3-1-1	장애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3-1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교육지원	3-1-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활성화	복지부	건강증진과
	강화	3-1-3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장애학생 맞춤형	3-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3-2	특수교육 지원 강화	3-2-2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2	장애인	3-3-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	장애학생 평생교육팀
3-3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3-3-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교육부	장애학생 평생교육팀

4-3. 경제활동 분야

ан	ᄌᅒᆡᆌ		세부 추진과제	E	HCF기교() 티시	
연번	중점과제	연번	과제명		남당기관(부서)	
		4-1-1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확대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4-1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4-1-2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 , , , , , , , , , , , , , , , ,	4-1-3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지원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4-2-1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	
4-2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직업훈련 확대	4-2-2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	
		4-2-3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고용부	장애인고용과	
4.0	장애인	4-3-1	장애인 창업지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4–3	벤처·중소기업 지원	4-3-2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4-5. 체육·관광 분야

연번	년번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E	·다기간/ㅂ 녀)
건단	중심파제	연번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5-1-1	사회통합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THOUGH -110	5-1-2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5-1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지원 확대	5-1-3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지속 확충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5-1-4	장애유형·정도·연령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5-2-1	장애인 관광 접근성 제고	문체부	관광정책과
5-2	5-2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반 확충	5-2-2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문체부	관광정책과
		5-2-3	장애인 관광 참여 기회 확대	문체부	관광정책과

4-6.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분야

ан	줘ᆡᆌ		세부 추진과제		7C12NH 177
연번	중점과제	연번	과제명	7	남당기관(부서)
6 1	장애인 문화예술	6-1-1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문체부	예술정책과
6-1	접근성 제고	6-1-2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문체부	예술정책과
		6-2-1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정책 제도화	문체부	예술정책과
6-2	장애예술활동 지원	6-2-2	장애예술인・단체 창작물 유통지원 확대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화	6-2-3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 매개자 양성 교육 체계 구축	문체부	예술정책과
	ICT 기반 정보격차	6-3-1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보장	과기부	디지털포용정책팀
6–3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6-3-2	디지털 정보격차 및 접근성 수준 측정	과기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	6-3-3	정보 약자를 위한 디지털기기 보급	과기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6-4-1	장애인 미디어 접근 및 참여 강화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정책과
6-4		6-4-2	시·청각 장애인의 뉴미디어 접근성 제고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정책과
	<u> </u>	6-4-3	장애인의 미디어 역량 교육 강화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4-7. 이동·편의·안전 분야

연번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E	HCF기구F/日 14\			
한한 중심색제		연번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7-1-1	장애인 이동가능한 교통수단 확대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			
7–1	장애인 교통수단	7-1-2	장애인 교통수단 운영 개선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			
7-1	확대 및 이동보장	확대 및 이동보장 7-1-3 보행보조용 의자차(휠체어) 확대	보행보조용 의자차(휠체어) 인정 범위 확대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OLITHIBLO OLEL	7-2-1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확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7-2	일상생활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하대				7-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7-2			7-2-3	장애인 보조견 지원 확대 및 교통약자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흑네	7-2-3	보행편의 제고	행안부	안전개선과			
		7-3-1	그기 원이 자에이 제 어떤 대해 가장	행안부	(소관 미정)			
7 0	7-3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 3 1	국가 차원의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강화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7-3		7-3-2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7-3-3	감염병 재난 시 돌봄 지원체계 운영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4-8. 권익증진 분야

연번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다다기가(ㅂ 니)	
		연번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8-1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8-1-1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8-1-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내실화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8-1-3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 강화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8-1-4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및 장애공감 문화 확산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8-2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	8-2-1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8-2-2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자기결정권) 강화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8-2-3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활성화 지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8-3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및 차별 해소	8-3-1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강화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8-3-2	장애여성 인공임신중절 권리성 보장	복지부	출산정책과
		8-3-3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권익보호과 권익지원과
8-4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8-4-1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및 국제협력 분야 민관협력 확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8-4-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 전략 수립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8-4-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 실효성 제고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붙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실무추진단 명단

구분	위원장·분과장	위원
총 <u>괄</u> 위원회	박경수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진우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 권재현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의철 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염민섭 국장(복지부 장애인정책관) 성창훈 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태훈 국장(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하형소 국장(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윤진환 국장(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강대금 국장(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김일열 과장(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김성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 서비스 분과	김미옥 교수 (전북대학교)	이한나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명 교수(동덕여대) 조윤경 팀장(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상진 사무총장(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김성희 사무처장(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김재영 연구위원(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황백남 상임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거 · 자립지원 분과	이선우 교수 (인제대학교)	황주희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기철 교수(동덕여대) 김정하 활동가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허곤 원장(함께사는세상더홈) 기영남 정책지원국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건강 분과	호승희 과장 (국립재활원)	신용일 교수(양산부산대학교병원) 김정아 교수(한양대학교) 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동아 과장(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이시욱 교수(서울대 보라매병원) 배하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보육·교육 분과	박현옥 교수 (백석대학교)	이민경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정 교수(위덕대학교) 정민호 교장(세종누리학교)

구분	위원장·분과장	위원
		최진희 회장(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임장현 교수(건양대학교) 김수연 교수(경인교육대학교)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경제 활동 분과	윤상용 교수 (충북대학교)	강동욱 교수(한국복지대학교) 김호진 부장(한국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윤화 박사(한국장애인개발원) 이은실 박사(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신직수 사무총장(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디지털 · 미디어 분과	김용득 교수 (성공회대학교)	남세현 교수(한신대) 김동호 대표(장애주류화정책포럼) 박재훈 팀장(서울장애인복지관 디지털융합팀장) 홍경순 박사(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병연 부장(시청자미디어재단)
체육 분과	김권일 실장 (한국스포츠정책 과학원)	서은철 교수(원광대학교) 김민창 교수(한국체육대학교) 양한나 교수(백석대학교) 홍석만 박사(전 IPC선수위원) 이동철 연구위원(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문화 예술 분과	조현성 본부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동일 교수(강원대학교) 정종은 교수(상지대) 오세형 부장(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고귀염 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황영택 문화예술정책위원(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이동·편의·안전 분과	이동석 교수 (대구대학교)	배융호 이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박상우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이연주 실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호선 교수(가톨릭대학교) 이권희 대표(한국장애인인권포럼)
권익 증진 분과	전지혜 교수 (인천대학교)	이용표 교수(가톨릭대) 조은영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조윤경 사무국장(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해정 박사(한국장애인개발원) 이석구 위원